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공유 및 비용분담 실무가이드

2026년 5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주의사항

- ❖ 본 실무가이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대상이 되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가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 고려하여야 할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과 비용분담에 관한 방법을 다루고 있다.
- ❖ 본 실무가이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정부지원사업('14~'25) 및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 등록('16~'25) 등을 통해 축적된 지식과 경험,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전문가와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되었다.
- ❖ 본 실무가이드는 법적·강제적 효력을 갖지는 않으며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과 비용분담에 관한 일반적 방법에 관한 기술적 참고자료로써 개별적 특수성을 고려할 책임은 법상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에게 있다.
- ❖ 본 실무가이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예규 등이 정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활용되어야 하며, 관련 법령 및 상위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상이할 경우에는 법령과 상위규칙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개정이력

목록	주요 개정 내용	발행 시기
초판	등록신청자료 공유와 비용분담에 관한 안내서	2015년 2월
제1차 개정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제목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신청자료 공유와 비용분담에 관한 안내서'에서 '화학물질 등록자료 공유 및 비용분담 실무가이드'로 변경 ○ 실무가이드 개요 및 조항별 해설 전면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제2장.주요 법령사항' 법령에 대한 해설은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해설서에서 다루기 때문에 본 가이드의 취지에 맞추어 삭제 - [통합] '제2장. 등록신청자료의 공유'는 '(기존)제3장.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 제출방법' 과 '(기존)제4장.기존 자료의 공동활용'을 통합하여 공동등록 협의체 내 참여형태별로 내용 전개 및 설명 수정 - [내용 수정] '(기존)제5장.비용의 산정 및 분담'은 비용의 분담 방법에 대해서 공동등록 협의체 내 참여형태별로 설명방식을 수정하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협의체 운영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 협의체 운영과 적합하도록 내용 수정(예: 취급톤수와 비례하여 비용 분담-> 등록톤수구간으로 구분하여 비용 분담) ○ 2019년도 개정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내용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법 제10조): 기존화학물질의 등록대상을 연간 1톤 이상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에서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로 확대 - 기존화학물질의 신고(법 제10조제3항 신설):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않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2019년 12월

	<p>자는 화학물질의 명칭, 연간 제조·수입량의 톤수 범위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신고하는 기존화학물질의 연간 제조·수입량의 톤수 범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등록유예기간 부여 <table border="1" data-bbox="411 551 1241 831"> <thead> <tr> <th>등록유예기간</th> <th>연간 제조/수입 량</th> </tr> </thead> <tbody> <tr> <td>2021년 12월 31일까지</td> <td>1,000톤 이상 (연간 1톤 이상 CMR물질 포함)</td> </tr> <tr> <td>2024년 12월 31일까지</td> <td>100톤 이상 1,000톤 미만</td> </tr> <tr> <td>2027년 12월 31일까지</td> <td>10톤 이상 100톤 미만</td> </tr> <tr> <td>2030년 12월 31일까지</td> <td>1톤 이상 10톤 미만</td> </tr> </tbody> </table>	등록유예기간	연간 제조/수입 량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0톤 이상 (연간 1톤 이상 CMR물질 포함)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027년 12월 31일까지	10톤 이상 100톤 미만	2030년 12월 31일까지	1톤 이상 10톤 미만	
등록유예기간	연간 제조/수입 량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0톤 이상 (연간 1톤 이상 CMR물질 포함)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027년 12월 31일까지	10톤 이상 100톤 미만											
2030년 12월 31일까지	1톤 이상 10톤 미만											
제2차 개정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제목 수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 등록자료 공유 및 비용분담 실무가이드'에서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공유 및 비용분담 실무가이드'로 변경 ○ 2024/2025년도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 내용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2월, 2025년 11월 - 등록·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된 내용 반영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법 제15조): 기존화학물질의 공동제출 절차 중 협의체 구성 근거를 반영하여 설명 및 정의(협의체·대표자) 수정 -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비용계상의 원칙(법 제16조의2):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제3장. 비용의 산정 및 분담' 설명 수정 - 법 제16조의2를 반영하여 '제3장. 비용의 산정 및 분담' 내 비용분담 절차 및 방법*, 사례 수정 보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비용의 부담 방법을 협약 당사자 간 균등분담 →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범위별 차등분담 등 - '(기존) 제3장. 비용의 산정 및 분담 - 3. 논쟁 해결 방법'을 '제3장. 비용의 산정 및 분담 - 3. 분쟁 해결 방법'으로 수정하고 내부 콘텐츠 재구성* * 분쟁조정 절차, 국외 사례 조사, 조정신청 시 주의 사항 등 내용 반영 -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첨 '견본협약서' 수정 	2026년 5월										

개정 시기	조문	주요내용
2024. 2	화학물질의 등록 등 (제10조)	등록·신고의 기준이 되는 신규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을 연간 100킬로그램에서 1톤으로 조정
2025. 11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제15조)	기존화학물질의 공동제출 절차 중 협의체 구성의 근거를 시행 규칙에서 법률로 상향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비용계상의 원칙(제16조의2)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비용분담 및 공동활용에 관한 비용계상을 공정성·명확성·비차별성 원칙에 따라 당사자 합의로 정하도록 함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16조의3)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또는 공동활용에 차질이 있는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후발등록자가 조정을 신청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제16조의4)	조정의 상대방이 조정안 미수락 시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신설

- 제3장. 비용의 산정 및 분담 - 2. 비용분담 절차 및 방법 내 비용분담 예시 추가 및 보완
 - 가. 대표자 및 적극적참여자 내 신청자료의 공동제출에 관한 비용분담 예시 및 산정 시뮬레이션 수정
 - 나. 소극적참여자 비용분담 예시 및 후발등록자의 참조권 판매 비용 산정 예시 추가 작성
- 실무가이드 내 용어·설명 수정 등
 - '환경부'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됨에 따라 가이드 내 용어 수정·반영
 -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 부동의 확인신청서, 등록신청자료 추가 제출 기관을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수정
 - 협의체 참여 형태에 '소극적참여자'가 포함되도록 수정하고, 소극적참여자 및 후발등록자에 대한 용어 정의 수정
 - '공동등록', '톤수구간' 등의 용어를 '공동제출', '연간 제조·수입량 무계범위' 등 법정 용어로 수정

「 목 차 」

제1장. 개 요

1. 발간목적	1
2. 활용방안	2
3. 공동제출제도의 이해	4
가.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4
나. 공동제출을 위한 자료공유와 협의체 구성	4
다. 비용분담의 기본사항	5
라. 협의체 內 역할 구분	6
4. 용어정의	8

제2장. 등록신청자료의 공유

1.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범위	15
2. 등록신청자료의 공유 절차 및 참여 형태별 공유방법	17
가. 등록신청자료 공유 절차	17
나. 참여 형태별 '등록신청자료 공유'에 대한 역할과 책임	19

제3장. 비용의 산정 및 분담

1. 비용분담의 원칙 및 범위	28
가. 비용분담의 원칙	30
나. 비용분담 범위	33
2. 비용분담 절차 및 방법	35
가. 대표자 및 적극적참여자	35
나. 소극적참여자	44

3. 분쟁 해결 방법	50
가. 개념	50
나. 근거 규정	51
다. 분쟁조정 절차	52
라. 해외 사례	58
마. 분쟁 조정 신청 반려사유 예시	59
바. 분쟁 조정 신청 시 유의사항	60
4. 기타 고려사항	63
가. 추가자료제출 명령에 따른 비용분담	63
나. 공동제출 중도·포기 탈퇴 시 비용의 분담	64
별첨자료	66
가.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견본협약서	66
참고자료	81

「 표 목 차 」

<표 1> 실무가이드 구성	2
<표 2> 법 제10조제2항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범위별 등록유예기간 ...	4
<표 3> 법 제14조제1항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	15
<표 4>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유 시험자료 사용료 산정기준	18
<표 5> 자료확보방법에 따른 장·단점 비교	18
<표 6>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협약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는 항목	33
<표 7> 주요 비용 발생 자료 항목의 수	33
<표 8> (예시)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범위별 구성원 수	37
<표 9> (예시)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범위별 구성원 수에 따른 비용 계산	38
<표 10> 등록신청자료 준비 시 비용 발생 항목	38
<표 11> (예시) 무게범위별 시험비용, 행정비용 단가	39
<표 12> (예시) 무게범위별 행정비용 분담	40
<표 13> (예시) 무게범위별 시험비용 분담	40
<표 14> (예시) 기업별 총 분담비용	40
<표 15> 다른 시험자료 제출로 인해 제출이 면제되는 시험항목	41
<표 16> 무게범위별 구성원 수 가정	42
<표 17> 시험항목·시험비용 가정	43
<표 18> (예시) 최종 분담 비용	43
<표 19> (예시) 협의체 구성원 수 증가에 따른 정산 환급금	45
<표 20> (예시) 제출되어 있는 기존 자료	45
<표 21> 협의체 내 소극적참여자의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비용분담 계산 예시	46
<표 22>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 예시	59
<표 23> 주요 분쟁 유형별 제출서류 예시	61
<표 24> 관련 신문고 질의·응답 사례	64

「그림 목 차」

<그림 1> 공동제출 절차 내 자료공유와 비용분담의 흐름 및 실무가이드 구성	3
<그림 2> 공동제출 협의체 구성의 의의	5
<그림 3> 비용분담 방법(예시)	5
<그림 4> 공동제출 협약 참여 형태	6
<그림 5> 서브라이선스 유무에 따른 자료구매 절차	13
<그림 6> 협의체 참여 형태별 역할과 책임	19
<그림 7> 대표자 및 적극적참여자의 등록신청자료 공유 절차	19
<그림 8> 유해성 자료의 사용영역	21
<그림 9> 소극적참여자의 등록신청자료 공유 절차	23
<그림 10> 후발등록자의 등록 절차	25
<그림 11> 후발등록자의 등록신청자료 공유 절차	25
<그림 12> 비용분담의 원칙	30
<그림 13> 비용분담 업무의 흐름	35
<그림 14> 분담 기준 고려사항	36
<그림 15> 참여자 증가에 따른 분담비용 영향	44
<그림 16> 소극적참여자 구매비용의 결정	44
<그림 17> 분쟁조정 절차	53
<그림 18>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신청서	54
<그림 19>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	58

제 1 장 개 요

- 이 실무가이드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과 동법 제15조 및 제16조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공유(공동제출·공동활용) 방법 및 비용분담 방안을 제시
 - ※ 신규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경우에도 등록신청자료의 공유 및 비용분담 방안 활용 가능
-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 이행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실무 사항을 예시와 함께 안내하고 관련 법령과 연계하여 제시

※ 주의사항

본 실무가이드는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과 비용분담에 관한 일반적 방법에 관한 기술적 참고자료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향후 제반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수정·보완 및 갱신될 수 있으므로 활용 전 개정 여부 확인이 필요함

(참고) <등록신청자료 공유 및 비용분담과 관련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주요 조항>

제2장 화학물질의 등록

제10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시행령 제10조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시행규칙 제5조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제14조 화학물질의 등록 등 신청 시 제출 자료

제15조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시행규칙 제16조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시행규칙 제17조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제16조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시행규칙 제19조 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제16조의2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비용계상의 원칙

제16조의3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시행규칙 제20조의2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제16조의4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시행규칙 제20조의3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필요한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제17조 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 등록신청자료의 공유와 비용의 분담은 법에서 정한 기존화학물질의 공동제출 및 공동활용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 사항
-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해야 하며, 본 실무가이드는 등록신청자료의 공유와 비용분담 방안 마련을 위한 아래 세부 사항에 활용 가능
 - 화학물질 등록을 위해 구성된 공동제출 협의체 내에서 등록신청자료의 공유를 위한 절차 확인
 - 등록신청자료 확보, 공유 대상자료·방법 및 절차의 확인
 - 비용 발생 항목, 비용분담 원리 및 절차 확인
 - 대표자, 적극적참여자, 소극적참여자, 후발등록자 등 다양한 참여 형태별 등록신청자료의 공유 및 비용분담 시 고려사항
 - 실질적인 예시들을 통한 등록신청자료의 공유 및 비용분담 실무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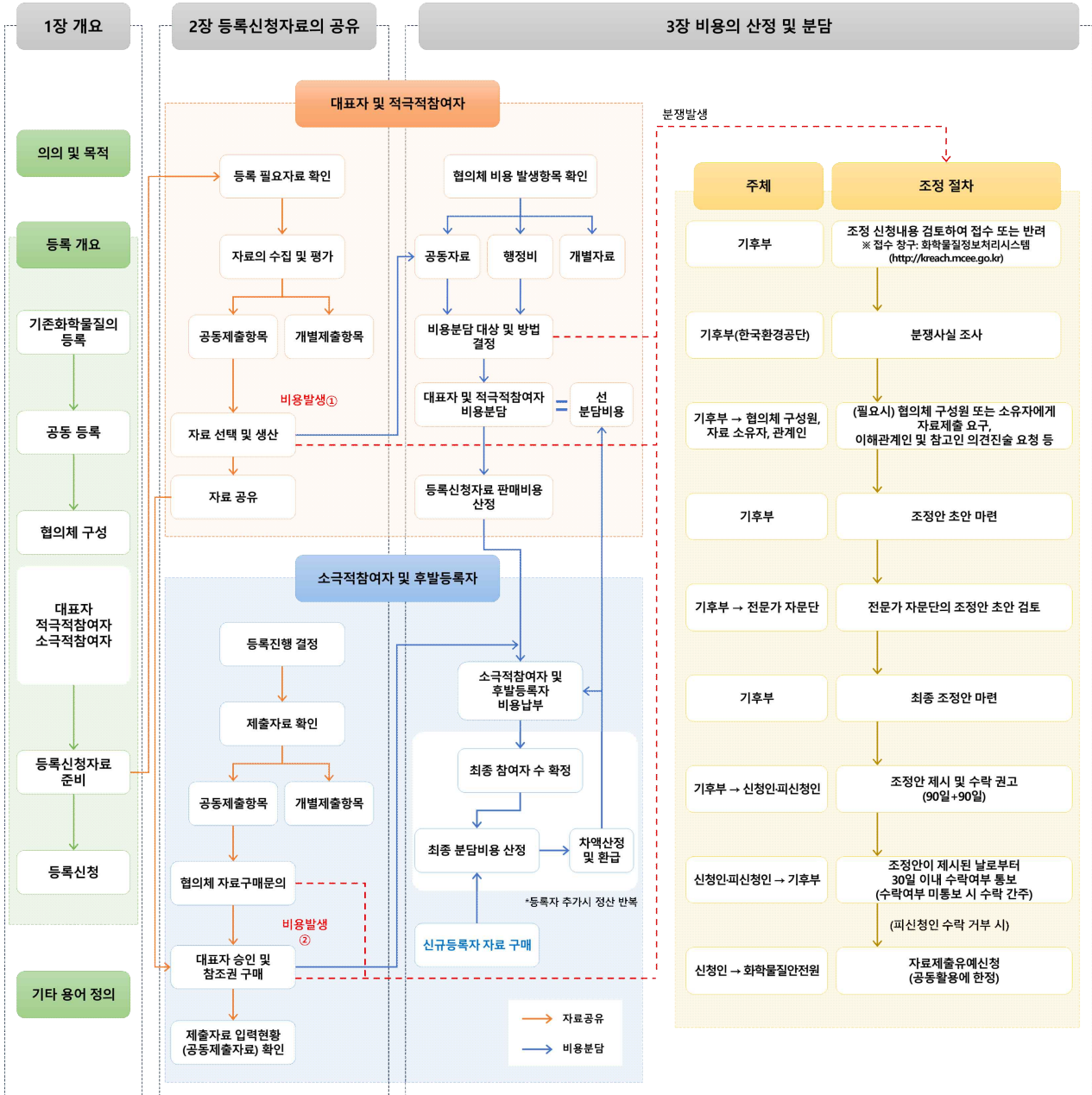
□ 실무가이드의 구성

- 본 실무가이드는 총 3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림 1>과 같이 공동제출·공동활용 절차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유와 비용분담에 있어 발생하는 세부 과정별 업무에 대해 기술함

<표 1> 실무가이드 구성

구분	주요내용
제1장. 개요	자료의 공유와 비용분담에 관한 법령상 조문, 용어 및 개념 정리
제2장. 등록신청자료의 공유	등록신청자료 중 공동제출·공동활용 대상과 공동제출 협의체 구성원* 간 등록신청자료의 공유 및 절차 안내
제3장. 비용의 산정 및 분담	등록신청자료 비용분담 항목, 방법 설명 및 예시

* 공동제출 협의체 대표자, 적극적참여자, 소극적참여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세 내용은 '라. 협의체 내 역할 구분' 참조



별첨자료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건본협약서

<그림 1> 공동제출 절차 내 자료공유와 비용분담의 흐름 및 실무가이드 구성

가.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신규화학물질뿐만 아니라 기존화학물질도 등록을 이행해야 제조·수입 가능
 - 2019년도 개정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제조·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의무
 - 2030년까지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범위별 3년 단위의 등록유예 기간을 부여하여 모든 기존화학물질 등록
- ※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은 공동제출이 기본

<표 2> 법 제10조제2항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범위별 등록유예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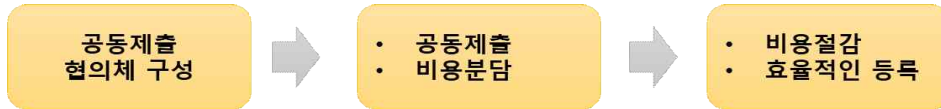
등록유예기간	연간 제조·수입량	비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1,000톤 이상	연간 1톤 이상 CMR*물질 포함
2024년 12월 31일까지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2027년 12월 31일까지	10톤 이상 100톤 미만	
2030년 12월 31일까지	1톤 이상 10톤 미만	

* 발암성(Carcinogenic), 돌연변이성(Mutagenic), 생식독성(Reproductive toxicity)

나. 공동제출을 위한 등록신청자료의 공유와 협의체 구성

- 기존화학물질 제조·수입자는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기존화학물질의 등록 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
- 제조·수입자 모두가 각각 등록할 경우 산업계에 상당한 부담
- 동일물질에 대한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을 통해 반복적인 시험 방지 및 산업계 비용 절감

- 별도의 개별제출 사유가 없다면 협의체 참여를 통한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이 효율적



<그림 2> 공동제출 협의체 구성의 의의

다. 비용분담의 기본사항

- 등록신청자료의 공유를 통해 발생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기존 화학물질 등록의 주요한 특징
 - 비용분담을 통하여 협약 당사자들은 개별로 등록하는 것에 비해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 얻음
 - 협약 당사자 간의 비용*분담은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범위에 따라 차등 분담하되, 같은 무게범위 내에서는 균등 분담을 기본으로 함
- * 공동제출 협의체 운영(행정)비용, 자료비용 등 등록신청자료를 준비하며 발생하는 총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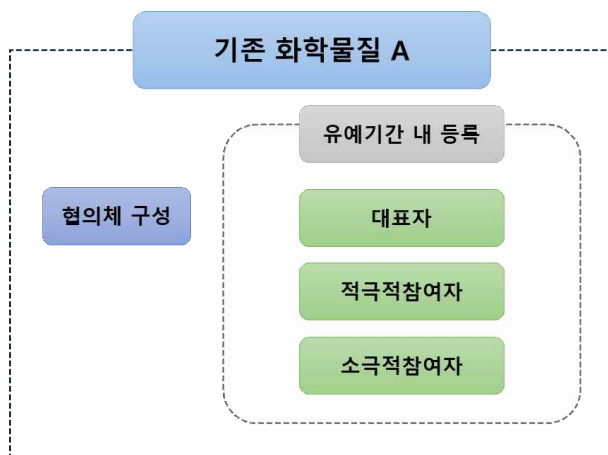
<그림 3> 비용분담 방법(예시)

- 협약 당사자가 증가할수록 협의체 내 비용분담 방법은 복잡해짐
 - 고려해야 할 개별 업체 특성의 증가, 협의체 내 의견조율의 복잡성·가변성 증가
 - 협약 당사자가 증가할수록 실제 재화의 입출과 관리에 대한 행정 업무 증가

- 협약 당사자들은 충분한 논의를 가지며 협의체 운영과 비용분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세한 기록 필수

라. 협의체 內 역할 구분

-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을 위해, 협약 당사자들은 역할 및 참여 시점 등에 따라 구분
 - 참여 형태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제출방법·절차, 비용 및 산정 방법 등 상이
 - 본 실무가이드 內 등록신청자료 공유 절차, 비용분담 방안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협의체 구성원별 역할에 대한 이해 필요



<그림 4> 공동제출 협약 참여 형태

○ 대표자

- ‘협의체에서 투표를 통해 선정된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권고*를 반영하여 선정된 자’를 의미
 - *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화학물질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협의체 구성원 중에서 제조수입량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시행규칙 제17조제4항)
- 하나의 기존화학물질 A의 등록을 위해 구성된 공동제출 협의체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함
- 기존화학물질 A 공동제출 협의체의 ‘대표자’는 협의체를 대표하여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를 대표자 명의로 제출함

○ 적극적참여자(Active member)

- 적극적참여자들은 대표자와 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제출 협의체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며, 일반적으로 '협약 당사자'를 의미
- 등록신청자료의 준비와 자료의 공유 등 공동제출 협의체 주요 안건들을 대표자와 논의함
- 비용의 선 분담 : 다양한 비용분담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등록 준비에 소요된 비용을 대표자와 함께 우선 분담함

○ 소극적참여자(Passive member)

- 소극적참여자는 사전신고를 하여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자로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내 공동제출 협의체에 가입한 자 중, 대표자와 적극적참여자를 제외한 자를 의미

* kreach.mcee.go.kr

- 등록유예기간 내 등록을 위해 기존 협의체로부터 '사용권' 또는 '참조권' 등의 형태로 자료비용 분담 후, 공동제출 진행
- 대상물질의 취급계획에 변동 가능성이 있어 검토가 필요하거나, 적극적인 협의체 활동이 어려운 경우 고려 가능
- 2019년 6월 30일 이후 사전신고를 통해 추가적으로 등록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자도 포함됨

(참고) 후발등록자

- 후발등록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전 신고를 했더라도 등록유예기간이 경과된 자
- 등록유예기간 이후 기존화학물질의 신규 제조·수입을 위해서는 제조·수입 전에 등록 필요
- '후발등록자'란 위의 등록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공동제출 협의체로부터 자료구매를 통해 등록을 진행하는 자를 의미
-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협의체 공동제출과 비용정산이 마무리된 후 참여하기 때문에 추가 비용 논의 및 정산이 필요함

□ 주요 용어의 정의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주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음

용어	정의
기존화학물질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화학물질 가. 1991년 2월 2일 전에 국내에서 상업용으로 유통된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나. 1991년 2월 2일 이후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라 유해성 심사를 받은 화학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
신규화학물질	기존화학물질을 제외한 모든 화학물질
사업자	영업의 목적으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사용·판매하는 자
총칭명	자료보호를 목적으로 화학물질의 본래의 이름을 대체하여 명명한 이름
하위사용자	영업활동 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자(법인의 경우에는 국내에 설립된 경우로 한정한다) 단,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제조·수입· 판매하는 자 또는 소비자는 제외
판매	화학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행위
등록유예기간*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주어진 기간 동안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제조·수입할 수 있는 기간 - 단,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미리 등록하여야 함
협의체*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자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제출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직
대표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5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협의체 구성원간 합의를 통해 선정된 자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고를 반영하여 선정된 자

* 관련 법 조항에 의거하여 유추한 정의임

□ 기타 용어 정의

- 실제 공동제출 업무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실무적인 용어의 추가 정의는 아래와 같음
- 참조권 & 사용권

(참고)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견본협약서'中, 기후에너지환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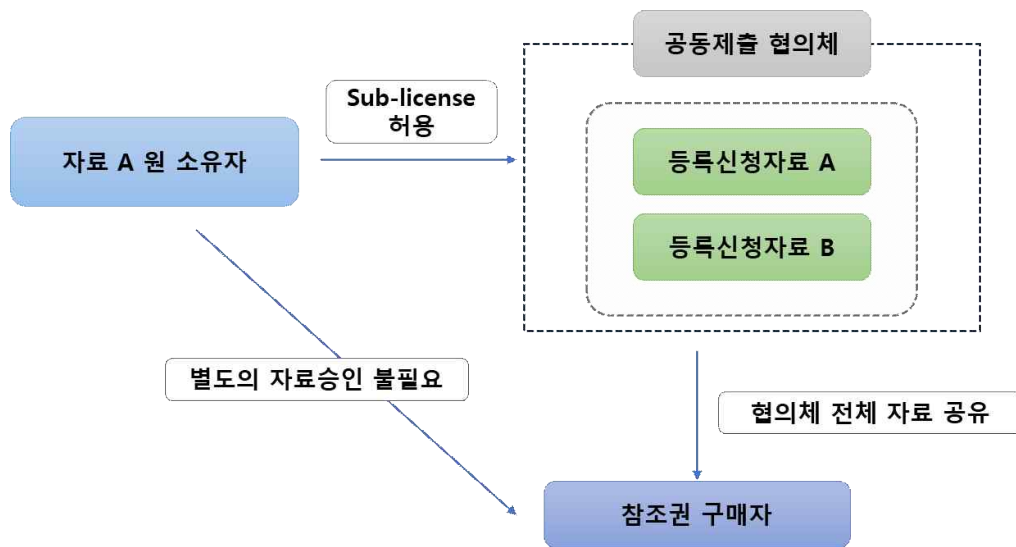
- 참조권: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을 목적으로 등록신청에 필요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권한
- 사용권: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목적은 물론 다른 목적을 위해 아무런 제한 없이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 구매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용도 및 목적,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에 따라 구분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의 일반적인 등록신청자료 구매는 '참조권' 거래를 의미하며, 본 실무가이드에서도 '참조권'의 용어를 주로 사용

※ 만약, 동일한 등록신청자료를 타법(화학제품안전법 등)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권'으로서 구매 고려 가능

○ 서브라이선스(Sub-license)

- 등록신청자료의 원소유자가 아니더라도 공동제출 협의체 내에서 해당 등록신청자료를 타인에게 공유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의미
- 공동제출 협의체로부터 등록신청자료 구매 시 '서브라이선스'가 없는 경우, 별도로 원소유자에게 구매 필요



<그림 5> 서브라이선스 유무에 따른 자료구매 절차

- 해외 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자료부터 구매하는 등록신청자료에 ‘서브라이선스’가 없는 경우, 해외의 원소유자에게 구매 필요
- 참조권 구매 시 ‘서브라이선스’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 ‘서브라이선스’를 포함하여 구매하는 경우, 이후 발생하는 참조권 판매 비용 정산에 참여할 수 있으나, 참조권 구매 비용이 상승할 수 있음
- ‘참조권’ 또는 ‘사용권’의 구매에 앞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 필요

제 2 장 등록신청자료의 공유

- 제조·수입하는 모든 화학물질과 혼합물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타법에서 관리하는 화학물질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법 제3조 해당)
- 화학물질이 관련 법에 따라 관리되지 않는 경우,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적용

01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범위

-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범위 확인
 - <표 3>을 참고하여 공동제출/개별제출 범위의 확인 및 그에 따른 제출절차 진행
-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 법 제15조에 따라 공동제출 협의체의 등록신청자료를 공유
- 개별제출 등록신청자료
 - 개별적 서류 준비 및 제출
- 선택적 공동제출 가능 등록신청자료
 - 공동제출 협의체의 합의를 통한 공동제출 범위 명확화 필요

<표 3> 법 제14조제1항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개별제출
1	제조·수입하려는 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
2	화학물질의 명칭, 분자식·구조식 등 화학물질의 식별 정보		○
3	화학물질의 용도		○
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	
5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	
6	화학물질의 유해성	○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개별제출
7	화학물질의 전과정에서 취급방법과 노출통제·관리방법을 기술한 노출 시나리오를 포함한 위해성(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8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보호구, 폭발·화재·누출 시 응급조치사항 등)	△*	
9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 합의에 따라 공동제출 혹은 개별제출 선택이 가능한 자료

가. 등록신청자료 공유 절차

○ 대표자 및 적극적참여자(Active member)

- 사용 가능한 등록신청자료의 수집
- (사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없는 경우) 시험자료의 생산
- 등록신청자료의 작성
- 공동제출 자료 준비 비용 및 총 비용의 산정
- 협의체 내 적극적참여자 비용분담 금액 산정
- 비용분담
- 적극적참여자의 공동제출 참여 승인 요청
- 대표자의 공동제출 참여 승인
- 등록신청자료 공유

○ 소극적참여자(Passive member)

- 등록신청자료 공유 주체 확인
- 자료공유 형태(사용권/참조권) 확인
- 등록신청자료 소유자(공동제출 협의체 대표자 등)의 사용동의
- 참조권 구매
- 공동활용자료 확보 및 등록신청서 제출

(참고) 가용 자료의 국내외 구매경로 비교

①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유 시험자료 구매

- 국내 화학산업계의 원활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물질등록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질별 유해성 시험결과(보고서)를 생산하여 기업에 제공 및 판매
-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료 산정기준은 다음 <표 4> 참조

<표 4>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유 시험자료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시험자료 사용료 산정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유자료 (한국환경공단 사용승인 관리)	- 협의체 단위(자료취득 금액의 30%) - 기업 단위(자료취득 금액의 5%, 소상공인 3%)

※ 사용신청 전 확인 문의 필수

- 유해성시험결과(보고서) 사용료는 기본적으로 협의체, 기업 등 구매 신청 단위에 따라 상이함
-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시 『유해성 시험자료의 사용승인 및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사용료)에 근거하여 사용료를 산정하고 사용승인서 부여
- 비용적으로 유리한 구매방식을 선택하여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 권고

② 해외의 자료소유자로부터 보유자료 구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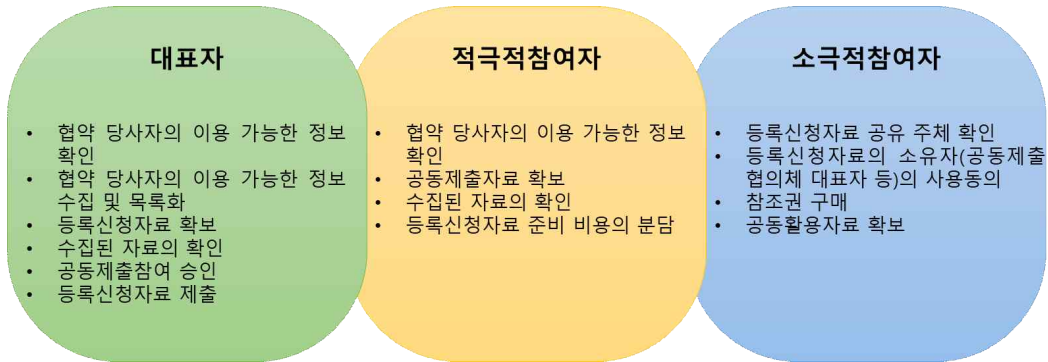
- 유럽의 REACH와 같이 해외 화학물질 등록에 사용된 기존시험자료의 사용
- 해당 화학물질의 EU REACH 컨소시엄 혹은 LR(Lead Registrant)과 접촉하여 자료구매 협상 시도
- 자료소유자별로 자료 사용료는 상이하게 책정됨
- 일반적으로 해외 자료 구매는 참조권을 구매하는 형태, 참조권 비용은 시험자료 생산비용의 일부 비율로 책정

<표 5> 자료확보방법에 따른 장·단점 비교

자료확보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 보유자료	국외 기존자료	직접 생산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 신뢰성(Quality) 검토 가능 • 합리적 비용 • 자료 확보 소요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복시험의 지양으로 동물윤리의식 준수 • 분류 및 표시 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시험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신뢰성 높은 유해성평가자료 생산 가능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류 및 표시의 불일치 가능성 • 자료가 제한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 자료소유자와의 의사소통 한계 • 자료공유 계약체결을 위한 행정업무에 투입되는 자원발생 • 자료 신뢰성 검토 한계 • 자료공유 계약 조건에 따른 열람/사용 제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용지출이 큼 • 시험진행 시간 소요 • 분류 및 표시의 불일치 가능성

※ 주의사항: 자료 확보방법별 특징 및 장·단점은 다양한 변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물질에 대한 적용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판단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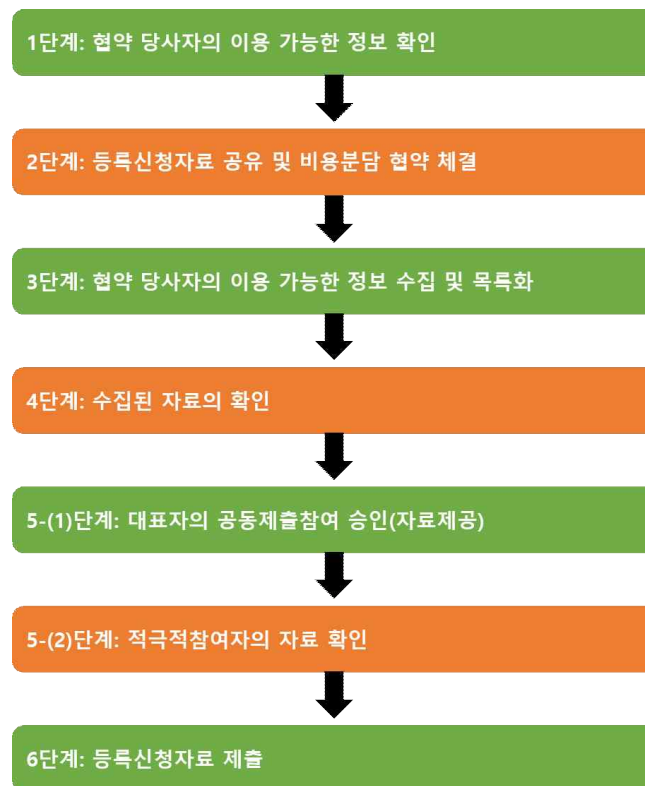
나. 참여 형태별 '등록신청자료 공유'에 대한 역할과 책임



<그림 6> 협의체 참여 형태별 역할과 책임

○ 대표자 및 적극적참여자

- 대표자는 적극적참여자와 함께 공동제출을 위해 먼저 확보되어야 하는 유해성 자료를 최선단에서 준비하는 역할수행
- 대표자와 적극적참여자의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준비 방법은 아래 <그림 7>과 같이 단계별로 기술



<그림 7> 대표자 및 적극적참여자의 등록신청자료 공유 절차

(1) 1단계 : 협약 당사자의 이용 가능한 정보 확인

- 협약 당사자의 이용 가능한 정보 유무 확인: 모든 이용 가능한 정보를 수집 권고
- 보유 또는 확보 가능한 자료의 파악을 통해 중복시험 실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방지할 수 있음
- 등록신청자료 확보 비용·소요시간 경감을 위함

(2) 2단계 : 협약 당사자 간 등록신청자료 공동활용 및 비용분담을 위한 협약 체결

- 가장 적합한 협력의 형태로 자료공유 및 비용분담 방법의 주요 규칙들에 대해서 합의하는 것이 권고됨
- 규정화된 협력 방식과 협약서는 존재하지 않으나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제공하는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건본협약서'를 참고
- 각 당사자의 의견을 조율 및 반영하여 협의체 운영의 기준 구축하기 위함

(3) 3단계 : 협약 당사자의 이용 가능한 정보 수집 및 목록화

- 협약 당사자의 보유자료 조사 및 수집 진행

(참고) 협약 당사자의 소유자료 활용 시 장점

- ①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자:
 - 기존에 지출하였던 시험비용 중 일정 부분의 비용을 보존 가능
 - 국외 등록자료로 사용되었던 자료의 경우, GHS 분류체계의 통일화
- ② 공동제출 협의체:
 - 기존자료를 구매함으로써 중복시험을 방지하고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등록신청자료 확보
 - 등록신청자료 확보 소요시간 단축 효과

(4) 4단계 : 수집된 자료의 확인

- 사용 가능한 자료의 취합
- 수집한 자료의 평가
- 수집된 자료는 <그림 8> 후단과 같이 다양한 영역에서 핵심기초자료로 사용됨
-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유해·위해성 평가가 진행될 뿐만 아니라 분류 및 표시의 핵심자료로 사용
- 따라서 반드시 다음 단계에 이르기 전에 자료의 신뢰성, 타당성, 적합성에 대한 종합적 평가 필요
- 자료취합, 목록 작성 후 제출자료별 적합성 여부의 확인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등록유예기간 내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협약 당사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



<그림 8> 유해성 자료의 사용영역

- 물질의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사용 여부를 결정
-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의 시험방법에 관한 규정” 및 해당 규정 내 시험별 평가항목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자료의 질(Quality)을 평가

- ① 신뢰성 : 표준화된 방법론에 관한 간행물/시험자료의 품질, 명료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을 제공하기 위해 시험절차 및 결과들이 설명되는 방법을 평가
- ② 적합성 : 유해성·위해성 평가 목적들을 위해 자료의 유용성 정도
- ③ 관련성 : 시험자료가 특정 유해성 확인이나 위해성 특징화에 부합하는 정도

(5) 5-(1)단계 : 대표자의 공동제출 참여 승인

- 협약 당사자에게 등록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료제공
- 등록신청 자료의 실질적인 공유단계에 해당
- 합당한 비용분담을 완료한 협약 당사자에게 대표자가 화학물질정보 처리시스템에서 공동제출 참여 '승인' 버튼을 클릭함으로써 이루어짐

(6) 5-(2)단계: 적극적참여자의 자료확인

- 적극적참여자는 대표자와 함께 등록신청자료를 최선단에서 준비하는 역할
- 적극적참여자도 준비한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는 실제 절차에서는 협의체 구성원으로서의 비용분담 필요
- 대표자로부터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공동제출 참여 '승인' 받은 후, 승인받은 공동제출자료 확인

(7) 6단계: 등록신청자료 제출

- 참조권 입력
- 공동제출 참여 승인으로 대표등록자의 등록신청자료를 화학물질정보 처리시스템으로 공유받음
- '<표 3> 법 제14조제1항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 자료' 중 승인받은 무게범위에 해당되는 자료가 승인멤버에게 시스템상 공유됨

(참고)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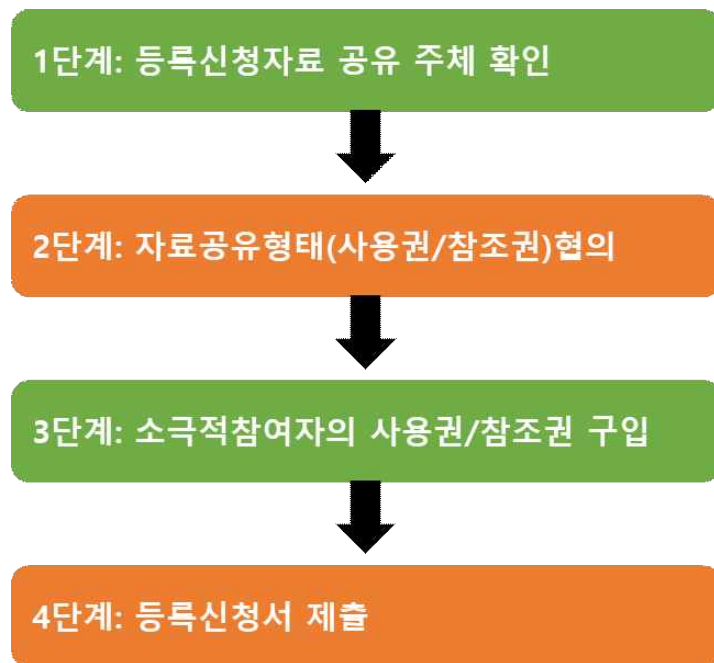
- ①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는 제10조제6항에 따라 각자 등록을 신청하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자료는 이를 공동제출하기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고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이하 "개별제출확인"이라 한다)을 받고 개별적으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0., 2020. 5. 26., 2025. 10. 1., 2025. 11. 11.>

1. 기업의 영업비밀이 공개되어 상당한 상업적 손실이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별적으로 제출하는 경우, 해당 자료들을 각자 작성하여 제출함

○ 소극적참여자

- 등록신청자료 준비 단계에 참여하지 않고 준비가 완료된 후 등록에 참여
- 적극적참여자의 등록신청공유가 시기적으로 먼저 진행된다는 점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소극적참여자의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을 준비하기 위해 아래 <그림 9>와 같은 동일한 절차 수행



<그림 9> 소극적참여자의 등록신청자료 공유 절차

(1) 1단계-등록신청자료 공유 주체 확인

- 등록신청자료 공유 주체 확인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동제출 대표자를 확인하여 참조권 판매처 확인

(2) 2단계-자료공유 형태(사용권/참조권) 협의

- 등록신청자료는 사용 범위에 따라 사용권/참조권으로 구분(자세한 설명은 '제1장 - 기타 용어(p.12)' 설명 참고)
- 해당 협의체에서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한 조건에 따라 구매 가능한 자료공유 형태가 단일조건에 국한될 수 있음
- 사용범위가 확대된 자료공유 형태일수록 공유 비용은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

(3) 3단계-소극적참여자의 사용권/참조권 구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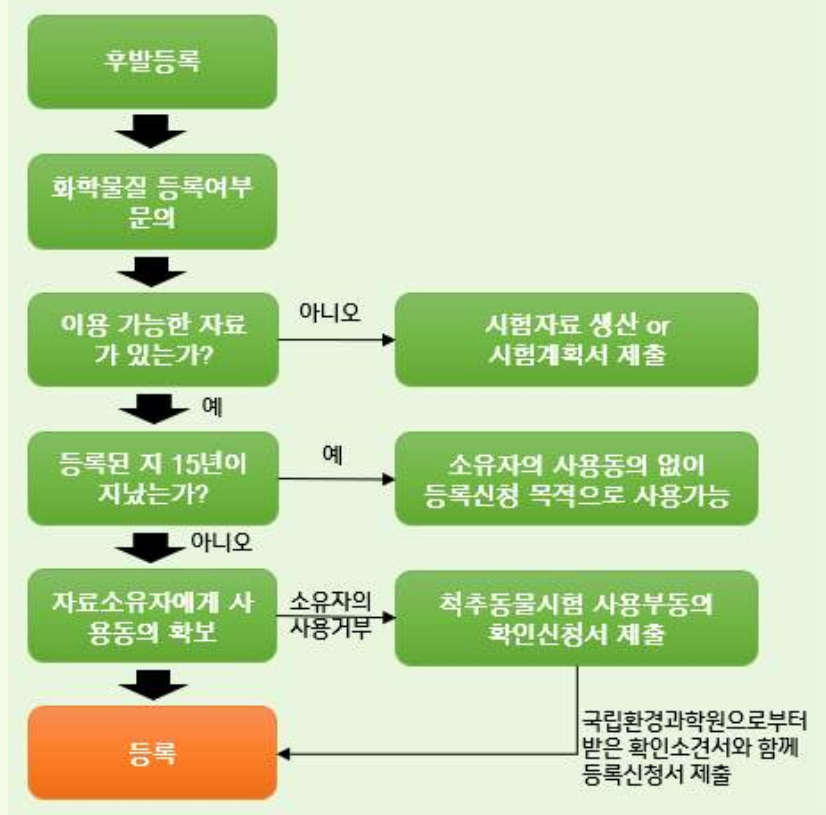
- 소극적참여자의 참조권 구입 과정은 적극적참여자의 '공동제출 참여 승인' 받는 과정과 동일

(4) 4단계- 등록신청자료 제출

- '적극적참여자의 등록신청자료 제출'과 동일

(참고) 후발등록자

- 등록유예기간 이후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을 진행하는 자
- 제조·수입 전에 등록 이행
- 아래 <그림 10>과 같이 이용 가능한 등록신청자료의 유무 확인절차 필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에 따라 등록신청자료 소유자(기존화학물질 공동제출의 경우 대표등록자)로부터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 가능



<그림 10> 후발등록자의 등록 절차

- 이용가능한 등록신청자료가 있다면, 아래 <그림 11>과 같은 절차상의 단계를 수행



<그림 11> 후발등록자의 등록신청자료 공유 절차

- 1) 1단계-등록신청자료 공유 주체 확인
 - 후발등록자의 경우 등록유예기간 이후에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적극적참여자 및 소극적참여자와 등록신청자료 공유 절차에서 차이 존재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공동제출 대표자를 확인하여 참조권 판매처 확인

- 2) 2단계-자료공유형태(사용권/참조권) 협의 및 구매조건 확인
 - 등록신청자료는 사용 범위에 따라 사용권/참조권으로 구분(자세한 설명은 제1장 - 기타 용어 설명(p.12) 참고)
 - 해당 협의체에서 등록신청자료를 확보한 조건에 따라 구매 가능한 자료공유 형태가 단일 조건으로 제한될 수 있음
 - 사용권/참조권으로 구분하여 자료공유가 가능하나 자료공유 형태에 따라 등록신청자료 소유자와의 협의 시간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수 있음

- 3) 3단계-기존 등록신청자료 사용동의 요청
 - 등록신청자료 소유자(기존화학물질 공동제출의 경우 대표등록자)에게 사용동의 요청
 - 법 제16조의5(척추동물시험의 최소화 원칙)과 제17조(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 등록신청 시 활용 의무 따름
 -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기존화학물질 공동제출의 경우 대표등록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에 확인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해당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음
 -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소유자(기존화학물질 공동제출의 경우 대표등록자)와 자료 및 비용분담에 대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여 기존 등록신청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 4) 4단계-기존 등록신청자료 확보 및 제출
 - 등록신청자료 소유자(기존화학물질 공동제출의 경우 대표등록자)로부터 공동제출 참여 승인을 받아 등록신청자료 확보
 - 기존 공동제출 협의체 구성원의 자료공유 방식과 마찬가지로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에서 등록신청자료가 후발등록자의 제출서류에 자동으로 반영

제 3 장 비용의 산정 및 분담

- 본 3장에서는 등록 비용의 산정과 분담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을 참여 형태별로 안내
- 비용의 산정과 분담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며, 본 실무 가이드에서는 일반적인 방법과 예시를 통해 설명

01

비용분담의 원칙 및 범위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등록 비용분담은 화학물질 등록과 관련된 실제 비용을 협약 당사자 간에 분담하여 비용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함
- 협의체의 운영뿐만 아니라 등록 비용의 산정·분담은 협약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짐
- 협약 당사자들은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하고, 명확하며,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비용분담 방법을 결정해야 함
- 협약 당사자들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충분한 논의 필요

(참고) 법 제16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비용분담·비용계상의 원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에 관한 비용의 분담 및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에 관한 비용의 계상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정한다.

1. 당사자별 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등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
2. 등록신청자료의 생산·제출을 위하여 소요된 실제 비용 및 비용분담의 방법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등 투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

3. 특정 당사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것

[본조신설 2025. 11. 11.]

시행규칙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원은 상호 간 합의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5. 12>

②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6. 5. 12>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을 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

2. 해당 화학물질이 고분자화합물로서 수평균분자량의 범위, 물에 녹는 정도
등의 특성이 명확히 달라 동일한 명칭 또는 식별정보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화학물질로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정보 또는 제출해야
하는 등록신청자료가 다른 경우

③·④ (생략)

⑤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협의체의 구성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1. 15., 2018. 12. 28., 2026. 5. 12>

1. 공동 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에 관한 업무

2. 공동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에 관한 업무

3. 그 밖에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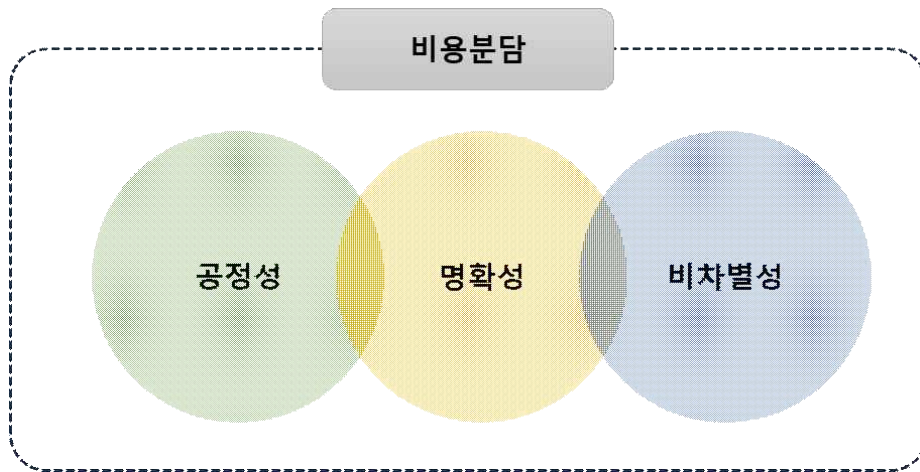
○ 협의체 내 비용분담에 관한 기본적 사항들은 일반적으로 '대표자'와
'적극적참여자'를 통해 우선 논의됨

○ 이는 '대표자'와 '적극적참여자'들이 물질등록을 가장 먼저 진행하기
때문이며, 협약서를 바탕으로 등록신청자료 제출계획, 비용 계획
등을 우선 논의하고 결정함

○ 비용과 관련된 사항들은 민감한 사안이므로 협의체의 비용분담에 관한
모든 과정을 기록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가. 비용분담의 원칙

- 법 제16조의2를 통해 협약 당사자들은 '공정성', '명확성', '비차별성'을 비용분담 원칙으로 하여 비용을 산정하고 분담해야 함
- 협약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비용의 산정과 분담 방법을 결정하되, 다음의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그림 12> 비용분담의 원칙

- 공정성
 - 당사자별 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 등을 포함한 모든 협약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합리적 기준을 정하여 공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
 - 각 협약 당사자에게 불필요한 등록신청자료 및 정보 구매 자제
 - 협약 당사자의 등록신청 무게범위에 근거한 시험자료 구매 및 생산비용 분담
 - 시험자료 외 비용(행정적 비용, 기타 등록서류 준비 비용 등) 분담 시, 협약 당사자 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합의에 따를 것
 - 시험자료 소유자가 물질등록을 위한 공동제출에 참여하는 경우, 시험자료 소유자에 대한 시험자료 구매·생산 비용분담 자제

-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비용분담 방법의 설정
- 등록신청자료의 참조권 판매 등에 따른 수익은 균등하게 배분
- 최종 비용분담은 소수 협약 당사자만의 협의가 아닌, 동일한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모든 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할 것
- 비용산정을 위해 제출자료의 가치를 공정하고 신뢰성 있게 평가할 것
- 공동제출 비용분담 및 참조권 판매를 통한 특정인의 이윤 창출 행위는 공정성 원칙에 위배 됨

○ 명확성

- 등록신청자료의 생산·제출을 위하여 소요된 실제 비용 및 비용분담의 방법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등 투명하고 명확한 방법으로 결정할 것
- 협약 당사자 모두에 대해 투명하고 분명하게 적용할 수 있는 비용산정의 원칙을 마련할 것
-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비용에 대한 예측 및 공유 방안 마련
- 안전 사용 지침 및 위해성에 관련된 자료의 경우, 협약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따라 공동제출이 가능하나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술 필요
-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이후,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추가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의 비용분담 방법에 대해 사전에 협의할 것
- 협약 당사자 정보의 최신성 유지를 통해 명확한 비용분담 방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것
- 협약 당사자 간의 비용분담에 관한 내용을 협약서에 명확히 기술

- 등록준비과정에서 협의체를 위한 대표자만의 별도 시간과 노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가능
- 상호 간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는 경우, 충분한 의사소통과 협의를 거쳐 의문점을 해소할 것
- 공동제출 완료 후 발생하는 비용(행정비용, 추가 자료 제출 비용 등) 및 그 비용 분담 방법 또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관리되어야 함

○ 비차별성

- 특정인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합리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는 등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결정할 것
- 투명하고, 합법적이며 정당한 사유와 근거가 제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인에게 추가 요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없음
- 대표자 및 협의체는 후발등록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참조권을 안내해야 함
- 참조권을 구매하여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후발등록자는 기등록을 완료한 당사자와 같은 정보를 공유받을 권리가 있음
- 동일한 상황의 등록자에게 각각 다른 비용분담 모델을 적용하는 것과 서로 다른 상황의 등록자들에 대해 동일한 비용분담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비차별성 원칙에 위배 됨
- 근거 없이 과도한 참조권 비용을 산정하거나, 그 산정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참조권의 산정 또는 판매를 지연하여 특정 후발등록자의 등록 수행을 저해하거나 국내 화학물질 제조·수입을 독과점하려는 행위는 비차별성 원칙에 위배 됨

나. 비용분담 범위

- 협약 당사자간 비용을 분담하기에 앞서 공동으로 제출하는 자료와 각자 분담해야 하는 범위의 파악이 중요
-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한다고 하여 모두 동일하게 비용을 분담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협약 당사자 간 필요자료 및 자료별 비용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용분담 계획 설정이 필요함

<표 6>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협약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는 자료

제출 자료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화학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 공동제출 가능 항목 중, 다음의 세가지 항목에서 비용이 주로 발생

<표 7> 주요 비용 발생 자료 항목의 수

구 분	전체 제출 항목의 수
① 화학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13
②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인체유해성 15
	환경유해성 19
③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

- 특히 '화학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및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는 시험자료로서 등록신청 무게범위별로 종류와 비용이 상이함
- 협약 당사자는 등록물질의 특성 및 용도를 반드시 파악하고 시험 항목별 시험면제조건과 제출항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

-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는 취급하는 용도와 관련된 노출 시나리오가 다양해질수록 자료의 양과 비용이 증가함
- 따라서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의 비용은 노출 시나리오 수에 따라 결정되며, 균등하게 비용을 분담하거나 협약 당사자 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분담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02

비용분담 절차 및 방법

- 다수 참여자 간 비용 분담에서 산정된 비용의 '크기' 뿐만 아니라, 비용분담의 '방법'도 중요
- 등록신청자료의 공유에서 비용의 분담 방법은 참여 형태별로 차이가 있으며 각 참여 형태별 분담 방법과 고려사항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함



<그림 13> 비용분담 업무의 흐름

가. 대표자 및 적극적참여자

- 협약서를 바탕으로 물질등록을 제일 먼저 이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참여 형태
- 협의체의 비용분담 방법(분담 기준, 항목, 방법 등)에 대해 가장 먼저 논의하고 결정함

- 대표자 및 적극적참여자의 비용분담 및 절차는 가장 기본적인 것으로써 공통사항이 많기 때문에 '소극적참여자' 및 '후발등록자'들 또한 참고할 것을 권함
- 비용분담 기준
 - 분담을 해야하는 기준단위는 비용을 분담하기에 앞서 가장 확인해야 할 사항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등록의무 이행의 기준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함
 - 법과 동일하게 일반적으로 비용분담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분담함
- 계열사 또는 그룹사
 - 서로 다른 사업특성으로 인하여 다음과 같은 등록신청자가 있을 수 있음
 - ① 다수의 사업장이며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짐
 - ② 다수의 사업장이지만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짐
 - 법에 따라서 등록의무 이행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준으로 이행하지만, 협의체 내 비용분담 방법에 대해서는 논의할 수 있음



<그림 14> 분담 기준 고려사항

- 협의체 내 비용분담은 협약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정하므로, ①의 경우라도 하나의 사업자로서 비용을 분담하도록 협의가 가능할 수 있음

- 하지만, 이 경우 비용을 분담하는 전체 n 수가 줄어들게 되어 각 당사자의 분담비용은 증가하므로 협의체 구성원들 간의 협의를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비용분담 방법
 -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에 관한 비용분담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6조의2의 공정성, 명확성, 비차별성 원칙에 따라 협약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정함

*** 비용 분담 예시 : 법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기존화학물질 A의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려는 협약 당사자는 10개사 이고, 각 당사자별 연간 제조·수입량은 취급량이 다음 <표 8>과 같은 경우

<표 8> (예시)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범위별 구성원 수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범위	구성원 수(개사)
1-10톤 미만	3
10-100톤 미만	3
100-1,000톤 미만	2
1,000톤 이상	2

- 등록신청자료 비용을 10개사의 전체 구성원 수(개사, 이하 동일)로 균등분담하는 것이 아닌, 각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범위별 공유하는 자료별로 분담하는 것이 필요
- ※ 1,000톤 이상 등록 시 나머지 세가지 낮은 무게범위의 시험자료 모두 필요, 10-100톤 미만 무게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10-100톤 및 1-10톤의 시험자료가 필요함
- 연간 1-10톤 미만 범위의 자료비용은 10개사 분담 (10=3+3+2+2)
- 연간 10-100톤 미만 범위의 자료비용은 7개사 분담 (7=3+2+2)
- 연간 100-1,000톤 미만 범위의 자료비용은 4개사 분담 (4=2+2)
- 연간 1,000톤 이상 범위의 자료 비용은 2개사 분담

<표 9> (예시)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범위별 구성원 수에 따른 비용 계산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범위	무게범위별 분담 비용 계산
1-10톤 미만	$\frac{1}{3+3+2+2}$
10-100톤 미만	$\frac{1}{3+2+2}$
100-1,000톤 미만	$\frac{1}{2+2}$
1,000톤 이상	$\frac{1}{2}$

- 그 외의 기타 행정비용 또한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범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분담
 - 연간 제조·수입량 구간별 행정비용 가중치 비율 산정

$$\frac{(\text{제조} \cdot \text{수입량 구간별 비용} \times \text{제조} \cdot \text{수입량 무게범위별 구성원 수})}{\sum (\text{제조} \cdot \text{수입량 구간별 비용} \times \text{제조} \cdot \text{수입량 무게범위별 구성원 수})} = \text{가중치 비율}(\%)$$

- 연간 제조·수입량 구간별 행정비용 분담

$$\frac{(\text{제조} \cdot \text{수입량 구간별 비용 기준} \times \text{제조} \cdot \text{수입량 무게범위별 가중치 비율}(\%))}{\text{제조} \cdot \text{수입량 무게범위별 구성원 수}} = \text{개별 행정비용 분담}$$

○ 일반적인 분담 비용 산정 시뮬레이션

- 협의체에서 비용은 항목별로 분담하는 방법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음
- 등록신청자료를 준비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표 10> 등록신청자료 준비 시 비용 발생 항목

구분	항목	비고
운영비용	- 협의체 행정 비용 ※ 컨설팅 비용, CSR 비용 등 포함	
자료비용	- 화학물질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주요 비용 발생항목

- 분담비용 계산 시뮬레이션
 - 다음과 같이 협의체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범위별 구성원 수, 시험 비용, 행정비용 설정

*** 비용 산정 예시:**

<표 11> (예시) 무게범위별 시험비용, 행정비용 단가(구성원 수: 10개사)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범위	시험비용(만원)	행정비용*(만원)
1 - 10톤 미만	1,000	500
10 - 100톤 미만	2,000	5,000
100 - 1,000톤 미만	3,000	8,000
1,000톤 이상	4,000	10,000

* 행정비용의 경우, 컨설팅 비용과 CSR 비용 등 포함

※ 단가는 협의체에 따라 상이하므로, 실제 제출된 자료에 근거하여 선정 필요

구분	등록수량(톤/년)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범위
A	50	10 - 100톤 미만
B	950	100 - 1,000톤 미만
C	3	1 - 10톤 미만
D	1,707	1,000톤 이상
E	90	10 - 100톤 미만
⋮	⋮	⋮

○ '기업 B'의 분담비용계산 (등록 톤수 950톤/년; 100-1000톤 미만):

- 등록 톤수가 100-1,000톤 미만이므로 하위 무게범위(10-100톤 미만 및 1-10톤 미만)의 시험자료도 필요함

- 행정비용의 경우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범위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차등 분담함

- (예시) '기업 B' (100-1,000 톤 미만), 제조수입량 구간별 비용 기준(10,000만원*):

* 10,000만원(높은 무게범위 비용 기준) × 무게범위별 가중치 비율 ÷ 무게범위별 구성원 수

※ 등록 무게범위가 높을수록 제출자료의 종류(CSR 등) 및 범위가 다양하고 관련 행정절차가 증가하므로, 1,000톤 이상 무게범위(높은 무게범위 비용 기준)의 행정비용을 기준으로 가중치 비용을 산정

$$\frac{(8,000\text{만원} \times 2)}{(5,000\text{만원} \times 3 + 5,000\text{만원} \times 3 + 8,000\text{만원} \times 2 + 10,000\text{만원} \times 2)} = 30.5\%$$

$$\frac{(10,000\text{만원} \times 30.5\%)}{2} = 1,525\text{만원}$$

<표 12> (예시) 무게범위별 행정비용 분담(구성원 수: 10개사)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범위	행정비용 (만원)	구성원 수 (개사)	가중치 비율 (%)	분담비용 (만원)
1 - 10톤 미만	500	3	2.9	96.7
10 - 100톤 미만	5,000	3	28.5	950
100 - 1,000톤 미만	8,000	2	30.5	1,525
1,000톤 이상	10,000	2	38.1	1,905

※ 연간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일 경우,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CSR)'이 대상이므로 해당 구간부터 행정비용이 추가로 부과됨

- 등록 무게범위별 해당되는 시험비용 분담기업과 개별기업의 분담액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13> (예시) 무게범위별 시험비용 분담(구성원 수: 10개사)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범위	시험비용 (만원)	구성원 수 (개사)	개별기업 분담액 (만원)
1 - 10톤 미만	1,000	3	333 (1,000/3)
10 - 100톤 미만	2,000	3	667 (2,000/3)
100 - 1,000톤 미만	3,000	2	1,500 (3,000/2)
1,000톤 이상	3,000	2	1,500 (3,000/2)

- 무게범위별 시험자료 비용을 해당되는 기업별로 정리하고 행정비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예시) '기업 B' (100-1,000 톤 미만): 시험비용 (1-10톤 미만 + 10-100톤 미만 + 100 - 1,000톤 미만) + 행정비용(가중치 부여 분담)

<표 14> (예시) 기업별 총 분담비용(구성원 수: 10개사)

구분	등록 무게범위	분담비용(만원)		총 분담비용 (만원)
		시험비용	행정비용	
A	10 - 100톤 미만	1,000 (333+667)	950	1,950
B	100 - 1,000톤 미만	2,500 (333+667+1,500)	1,525	4,025

C	1 - 10톤 미만	333 (333)	96.7	429.7
D	1,000톤 이상	4,000 (333+667+1,500+1,500)	1,905	5,905
E	10 - 100톤 미만	1,000 (333+667)	950	1,950
∴	∴	∴	∴	∴

- 추가적으로 시험자료비용 이외에 분담해야 할 비용은 위의 방법을 응용하여 적용

○ 협의체 자료제출계획에 따른 비용분담

- 분담비용 산정 시 협의체 자료제출계획(시험면제조건)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의 '시험항목별 시험면제조건'에 의해 특정 시험자료 제출을 면제받는 대신 상위 무게범위의 시험자료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음
- 이 경우 상위 무게범위의 시험자료 활용을 전제로 면제받은 것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비용을 분담해야 함

<표 15> 다른 시험자료 제출로 인해 제출이 면제되는 시험항목

시험항목	시험면제조건
급성경구독성	물리적,화학적 특성이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어 급성흡입독성 시험자료를 제출하는 물질
반복투여독성 28일	반복투여독성(90일) 또는 만성독성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생식,발달독성 스크리닝	최기형성 또는 2세대 생식독성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어류급성독성	어류에 대한 만성독성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물벼룩급성독성	물벼룩에 대한 만성 수생독성 시험자료가 있는 물질

*** 비용 계산 예시: '반복투여독성 시험 자료의 제출'**

- 협의체 등록 톤수가 1,000톤 이상인 경우: 반복투여독성(90일) 또는 만성독성 시험자료 제출 시 반복투여독성(28일)의 시험자료 제출이 면제됨
- 시험항목 중 반복투여독성(28일)은 무게범위가 '10-100톤 미만' 및 '100-1,000톤 미만'인 구성원들이 제출해야 하는 자료
- 이 경우 협의체에서 제출하는 '반복투여독성(90일) 또는 만성독성' 시험자료의 비용분담에 대해서는 무게범위가 '1,000톤 이상'인 구성원들 뿐만이 아닌 '10-100톤' 및 '100-1,000톤' 무게범위의 구성원들과 협의가 필요함
- 예시와 같이 상위 무게범위의 자료를 공동제출하는 경우, 다음의 두 가지 비용분담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가) 비용분담 방법 ① : **균등분담**

- 모든 협약 당사자들이 해당자료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하는 방법
- 협약 당사자들의 등록 무게범위가 다를지라도 협의체 자료제출계획에 따라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였으니 차등 없이 비용을 산정

나) 비용분담 방법 ② : **면제한 자료비용과의 차이를 고려**

- 일반적으로 높은 무게범위의 시험자료비용이 낮은 무게범위에 해당하는 비용보다 높음
- 제출하는 높은 무게범위의 자료비용과 면제받은 낮은 무게범위 자료비용의 차이를 고려하여 산정

*** 나) 예시**

- 협의체 자료제출 계획에 따라 반복투여독성(90일) 제출을 통해 반복투여독성(28일) 제출을 면제받았고, '10-100톤' 및 '100-1,000톤' 협약 당사자들이 반복투여독성(90일) 시험자료비용을 분담해야 하는 경우
- 무게범위별 구성원 수는 다음과 같이 가정함

<표 16> 무게범위별 구성원 수 가정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범위	구성원 수(개사)	구분
10 - 100톤 미만	3	a 그룹
100 - 1,000톤 미만	1	
1,000톤 이상	5	b 그룹

- 비용분담 방법 ②와 같이 기존의 반복투여독성(28일) 제출에 해당하는 a 그룹의 분담비용은 아래와 같이 원 시험비용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함

<표 17> 시험항목·시험비용 가정

항목	국내 시험비용(만원)
반복투여독성(28일)	6,000
반복투여독성(90일)	10,000

- 협약 당사자별 분담비용은 다음과 같이 간단한 수식으로 계산

$$(3+1)a + 5b = 10,000 \text{만원} \quad \dots\dots\dots (1)$$

$$a : b = 6,000 \text{만원} : 10,000 \text{만원} \quad \dots\dots\dots (2)$$

- 위 두가지 식 (1), (2)번을 통해 산정된 최종 분담비용은 다음 <표 18>과 같음

<표 18> (예시) 최종 분담 비용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범위	구성원 수(개사)	구분	반복투여독성(90일) 분담 비용(원)
10 - 100톤 미만	3	a 그룹	8,108,108
100 - 1,000톤 미만	1		
1,000톤 이상	5	b 그룹	13,513,513

- 최종 시험자료 분담비용의 계산은 앞서 계산한 일반적인 무게범위별 분담비용에 반복투여독성(90일)에 대해 별도로 산정한 비용을 적용하면 됨
- 시험면제에 따른 분담방법의 예외 적용뿐만 아니라 협의체 특성별로 다양한 분담방법의 고려사항이 존재함
- 따라서, 일률적인 분담방법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 않음
- 각 협약 당사자는 개별적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방안을 서로 협의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함

나. 소극적참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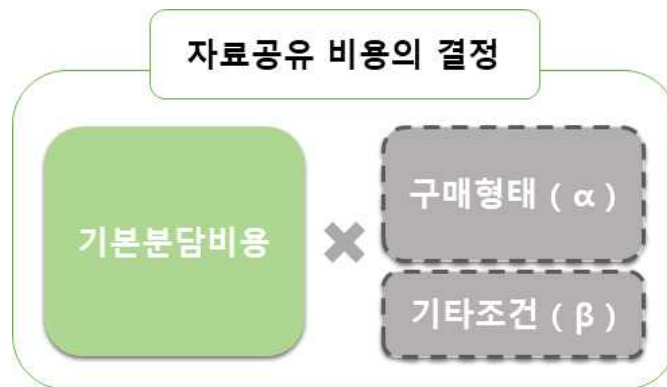
○ 비용의 정산 및 환급

- '대표자 및 적극적참여자'의 물질 등록 이후, '소극적참여자'의 참조권 구매를 통한 물질 등록이 진행됨
- 일반적으로 협의체 구성원간의 분담비용 산정은 1/n 방식이기 때문에 '소극적참여자'의 참여는 전체 분담비용의 감소로 이어짐



<그림 15> 참여자 증가에 따른 분담비용 영향

- '대표자 및 적극적참여자'는 '소극적참여자'의 참여시 분담할 '참조권' 비용의 설정이 필요함
- 다음 그림과 같이 '소극적참여자'의 구매비용은 기본 분담비용 외에 추가 비용분담 요소가 있음



<그림 16> 소극적참여자 구매비용의 결정

- 구매형태(α): 참조권 구매시, 적극적참여자의 초기비용부담 및 초기 행정소요에 대한 선도적 노력 고려 요소
- 기타조건(β): 각 협의체의 특수성에 따른 추가 반영 요소

- '참조권' 판매비용 또한 1/n 방식의 산정으로서 '소극적참여자'의 수가 중요하지만, 특성상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
- 분담비용의 환급: 일차적으로 예측한 수를 바탕으로 등록유예기간 만료일까지 '참조권'을 판매한 후 등록유예기간 만료와 함께 결정된 전체 협의체 구성원 수를 바탕으로 비용을 재산정하고 차액을 보존
- '소극적참여자'의 등록 또는 전체 협의체 구성원 수 증가(m)에 따라 정산되는 환급금은 다음의 수식으로 표현해 볼 수 있음

<표 19> (예시) 협의체 구성원 수 증가에 따른 정산 환급금 예시

구분	비용	기준 업체 수
협의체 전체 비용	T	
업체별 초기 분담비용	$\frac{T}{n}$	n
업체별 최종 분담비용	$\frac{T}{n+m}$	n + m
업체별 환급비용	$\frac{T}{n} - \frac{T}{n+m}$	

※ m : 증가한 등록참여자 수

*** 비용분담 예시 : 법 제15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제출 방법)**

기존(협약당사자 10개사)에 등록이 완료되어 다음과 같은 자료가 제출되어 있고, 동일물질에 대해 신규로 5개사의 소극적참여자가 자료를 활용하여 등록하려는 경우

- 법 제15조에 따라 협약당사자가 아닌 협의체 구성원인 소극적참여자는 기존화학 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공동제출하여야 함

<표 20> (예시) 제출되어 있는 기존 자료

등록신청자료	급성경구독성 복귀돌연변이 피부과민성 이분해성 급성어류독성 담수조류생장저해 급성물벼룩독성
--------	--

- 기존 자료소유자는 공정하고 명확한 비용 근거를 제시하며, 활용을 원하는 소극적 참여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함
- 소극적참여자의 등록 수 증가에 따라 정산되는 비용계상은 다음과 같음

<표 21> 협의체 내 소극적참여자의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비용분담 계산 예시

구분	비용(만원)	기준 업체 수
협의체 전체 비용	1,500	-
업체별 초기 분담비용	150 (1,500/10)	10개사
업체별 최종 분담비용	100 (1,500/15)	10개사 + 5개사
업체별 환급비용	150 - 100 = 50	

- 비용의 환급은 증가한 구성원 수에 따른 감소한 분담비용을 되돌려주는 간단한 개념
- 반면, 환급을 위한 물리적 행정업무는 간단하지 않음
 - 분담비용의 재계산과 원 분담비용과의 차액 계산: 세부분담사항에 대한 영향까지 확인
 - 업체 간의 비용 흐름 특성: 세금계산서의 처리(업체간 발행 흐름 관리, 회계연도의 차이 등)
- 등록유예기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추가 환급에 대한 고려 필요
 - 기존업체의 변경등록으로 인한 자료구매
 - 후발등록자의 참여로 인한 참조권 판매 등

(참고) '참조권' 형태가 아닌 '사용권'의 구매

- '사용권' 구매의 고려: 협의체로부터 등록신청자료를 구매하려는 '소극적참여자가 화학물질등록평가법상 등록 이외의 추가 목적이 있을 수 있음
 - '사용권' 형태의 구매는 '참조권'에 비하여 사용 범위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가격이 높음
 - 협의체의 자료 준비 특성에 따라 기타 조건이 추가 적용될 가능성 있음
 - '사용권' 구매를 위해 기존 협의체에 구매조건 등을 충분히 파악 후 진행할 것
- 소극적참여자 비용분담 시 추가 고려사항(적극적참여자와 일부 비용 우선 분담 방법)

- 적극적참여자의 협의체 활동 시 발생하는 시험자료비용 등에 대해, 우선 비용분담 협의 가능
- <그림 16>과 같이 소극적참여자의 구매비용은 기본 분담비용 외에 구매형태와 기타조건이 고려되어 산정됨
- 또한, 협의체 및 소극적참여자는 매 참여 시점마다 각 사항들을 고려한 비용의 산정, 분담 및 환급절차가 필요함
- 적극적참여자와 함께 비용분담이 가능하다면 중복적인 업무 소모를 줄일 수 있음

(1) 이점

- 비용산정 및 분담 업무 감소: 비용산정에 대한 행정적인 소모를 줄임
- 소극적참여자의 추가비용 방지: 기타조건(β)에 고려되는 추가비용 사항을 줄일 수 있음
- 적극적참여자의 부담 감소: 적극적참여자의 선 분담 비용에 대한 비율을 낮춤

(2) 고려사항

- 소극적참여자가 다수인 경우,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함

(참고) 후발등록자

- '후발등록자'란 물질등록 유예기간 이후, '참조권' 구매를 통해 신규로 물질등록을 이행하려는 자를 의미하며, '소극적참여자'와 달리 정해진 참여 시점이 없음
- 소극적참여자 : 물질의 기존 사용자로서 등록유예기간 전에 물질 등록
- 후발등록자 : 물질의 신규 사용자로서 제조, 수입 전에 물질 등록
- 기본적으로 '후발등록자'의 분담비용 산정은 '소극적참여자'와 동일
- '소극적참여자'와 참여 시점에 차이가 있으므로 협의체별로 추가 조건들이 고려될 수 있음: 일정 비율의 적용($+\alpha, \beta, \gamma\%$ 등)

- 초기 투자비용 분담 및 노력, 물가상승률, 시간 경과에 따른 이자 등
- 협의체에 따라 참조권 판매에 따른 정산 주기를 설정하여 정산할 수도 있음
- 비용 정산 방법

*** 예시 : 후발등록자의 참조권 판매 비용 산정 예시**

- 참조권 판매 시점에서 전체 등록을 완료한 협의체 구성원 수(적극적 및 소극적 참여자)를 바탕으로 참조권 판매비용 산정
 - (방식) 등록신청자료 생산에 소요된 총 비용을 전체 등록 완료한 협의체 구성원 수로 균등 분할하여 후발등록자의 참조권 판매비용 기준으로 활용

$$\text{참조권 판매 비용} = \frac{T}{n}$$

- ※ T : 등록신청자료 생산에 소요된 총 비용(컨설팅 비용 포함)
- n : 참조권 판매 시점에서 전체 등록을 완료한 협의체 구성원 수

- (적용 예시) 등록신청자료 생산에 소요된 총 비용 1,000만원 및 전체 등록을 완료한 협의체 구성원 수가 10개사인 경우:

$$\text{참조권 판매 비용} = \frac{1,000\text{만원}}{10\text{개사}} = 100\text{만원/개사}$$

- ※ 다만, 초기 투자비용 분담 및 노력, 등록신청자료의 연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 참조권 판매에 대한 정산
 - (방식) 협의체 정산 주기 내 발생한 후발등록자 수를 반영하여 참조권 판매 비용을 선행등록자*에게 환급**

* 정산시점에서 등록한 협약당사자, 소극적참여자 및 후발등록자(해당시) 모두 포함

** 후발등록자 유입에 따른 선행등록자가 부담한 비용을 사후 정산 환급하는 방식

$$\text{참조권 판매 환급금} = \frac{T}{n} - \frac{T}{n+m}$$

- ※ T : 등록신청자료 생산에 소요된 총 비용(컨설팅 비용 포함)
- n : 참조권 판매 시점에서 등록을 완료한 선행등록자 수
- m : 협의체 정산 주기 내 발생한 후발등록자 수

- (적용 예시) 등록신청자료 생산에 소요된 총 비용 1,000만원, 등록을 완료한 협의체 구성원 수 10개사 및 협의체 정산 주기 내 후발등록자 10개사가 발생한 경우:

구분	비용(만원)	기준 업체 수
등록신청자료 생산에 소요된 총 비용	1,000	-
초기 참조권 판매 비용	100 (1,000/10)	10개사
해당 정산 주기 내 참조권 판매 비용	50 (1,000/20)	10개사 + 10개사
환급금(선행등록자)	50 (100-50)	10개사

※ 다만, 초기 투자비용 부담 및 노력, 등록신청자료의 연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일부 조정 가능

- 참조권 비용 정산을 위해 행정비용이 발행한 경우 추가 가능

$$\text{참조권 판매 비용} = \text{해당 정산주기내 참조권 판매 비용} + \frac{\text{정산 행정비용}}{m}$$

※ m : 협의체 정산 주기 내 발생한 후발등록자 수

- (적용 예시) 해당 정산 주기 내 참조권 판매 비용 50만원, 협의체 정산 주기 내 발생한 후발등록자 수 10개사가 및 정산 행정비용 5만원 발생한 경우:

$$\text{참조권 판매 비용} = 50\text{만원/개사} + \frac{5\text{만원}}{10\text{개사}} = 50.5\text{만원/개사}$$

(참고) 후발등록자에 대한 참조권 비용 산정(비용계상)

후발등록자는 소극적참여자과 같이 참조권 형태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므로, 후발등록자에 대한 참조권 비용은 '제3장 비용의 산정 및 부담 - 2. 비용분담 절차 및 방법 - 나. 소극적 참여자'를 참고하여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6조의2 각 호에 따라 판매비용 결정

가. 개념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른 공동제출 협의체 구성 및 물질 등록의 준비에는 많은 일과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됨
- 다수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협의체 구성원 간에는 언제든지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고, 특히 비용과 같이 민감한 사안에는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참고)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건본협약서'中, 기후에너지환경부 제3장 협약의 운영

제12조(운영) ① 협약 당사자간의 의사 결정은 본 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호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대표자의 주재에 따라 협약 당사자 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 당사자 찬·반 동수로 인해 의사결정이 부결될 경우 대표자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③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서면 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결의 시 기한 내에 합당한 사유 없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3자와의 모든 계약의 체결 업무는 협약 당사자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표자 또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담당한다.

⋮

제5장 기타조항

제20조(분쟁 해결과 준거법) ①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조정, 중재법 및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등에 따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민사소송법 등에 의하여 해결한다.

⋮

- 대표자는 '공정성'과 '명확성'을 원칙으로 하여 협의체 비용에 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함
- 대표자의 서류 제출 이후 소극적참여자, 후발등록자에 대한 참조권 공유 및 판매에 대해서도 분쟁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 '소극적참여자' 및 '후발등록자'에 대한 참조권 판매 시, '+a%' 비율의 산정 및 자료판매 비용의 환급 등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투명하게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함
- 분쟁조정 신청 전 당사자 간 충분한 논의, 협의를 통해 의견 조율이 선행되어야 하며, 분쟁조정 절차는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여야 함

나. 근거 규정

-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6조의3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에 관한 합의 또는 공동활용 사용 동의의 불합리한 지연 등의 사유로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 단, 분쟁의 성질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을 하지 않을 수 있음

(참고) 법 제16조의3(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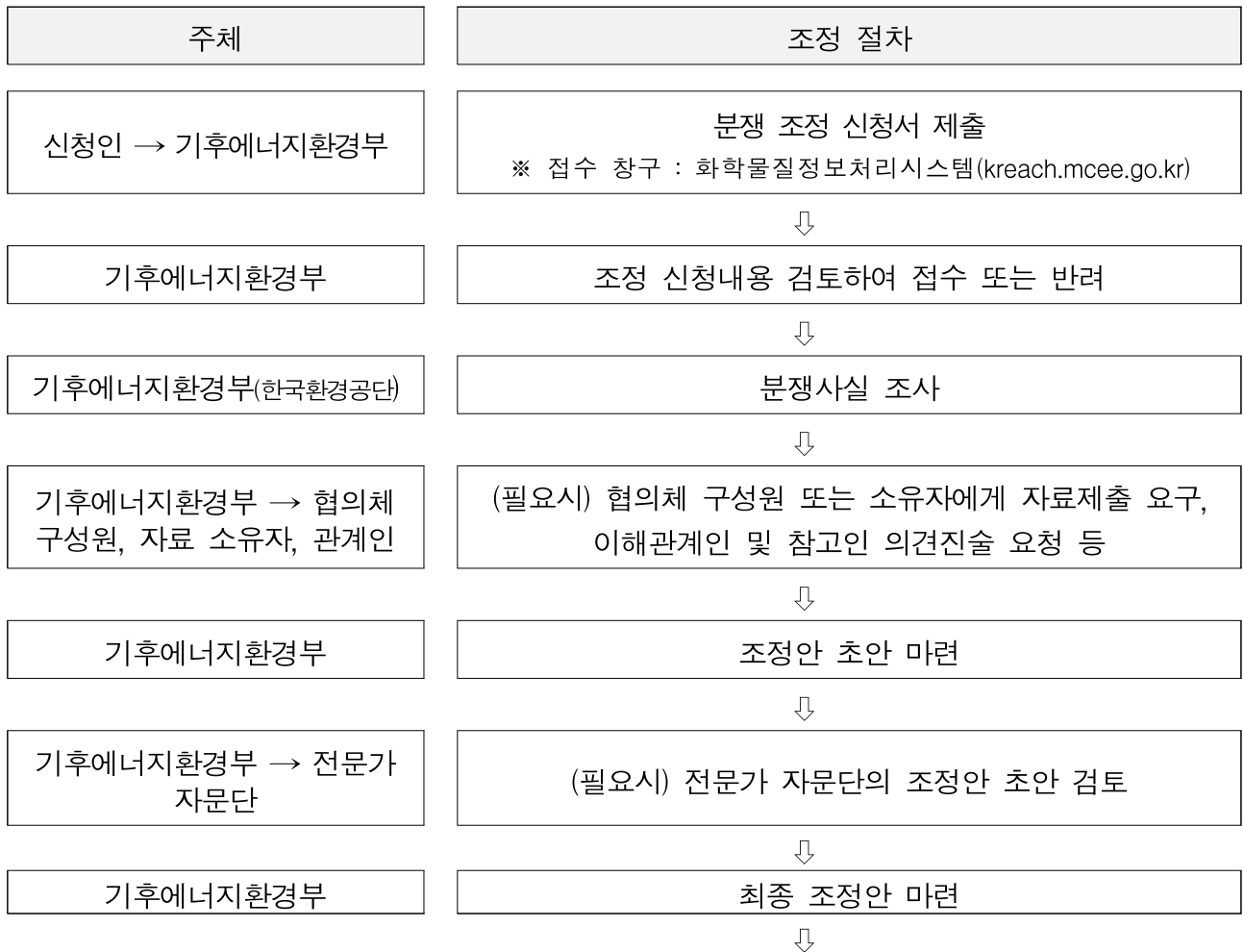
- ① 협의체의 구성원 또는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사용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동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 비용의 부담 및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제출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2. 불합리한 대가 요구 또는 거부 등의 사유로 기존 등록신청자료(제14조제5항에

다른 척추동물시험자료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사용동의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분쟁의 성질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1. 11.]

- 분쟁조정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20조의2에서 정하고 있음

다. 분쟁 조정 절차

- 분쟁 조정 절차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진행





<그림 17> 분쟁조정 절차

- 신청인은 시행규칙 등에서 정하는 요건에 맞추어 조정을 신청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접수 또는 반려
- 신청인은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
서식의 분쟁 조정 신청서에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 제출

(참고) 시행규칙 제20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라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분쟁 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됨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6. 5. 1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2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ace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꼭지 않고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알록)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90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사항	화학물질명 (출정명)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신청 사유	<input type="checkbox"/> 공통제출 및 공통 [] 분류·표시에 관한 자료 []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 유해성에 관한 활용 자료 종류 [] 시험계획서 [] 위험성에 관한 자료 []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input type="checkbox"/> 공통제출할 자료의 선택·생산, 비공의 분담 및 등록신청자료의 공통 작성·제출 등 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불합리한 대가 요구 또는 거부 등의 사유로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사용동의를 받기 어 려운 경우		
구체적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화학물질의 등록이 차질이 우려됨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2. 국내외 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률」 제38조에 따라 국제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없음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작성방법

1. "공통제출 및 공통활용 자료 종류"란은 분쟁 조정이 필요한 자료를 선택합니다.
2. "구체적 사유"란은 분쟁이 발생한 주요 정황을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조정안 제시
신청인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

210mm×297mm[박상지(80g/㎡) 또는 중용지(60g/㎡)]

<그림 18> 등록신청자료의 분쟁 조정 신청서

- 신청요건 미비, 분쟁 사유가 아닌 경우 등 반려될 수 있으며, 사전에 당사자와 충분히 합의를 시도하고 신청해야 함

(참고) 반려사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정하는 조정신청사유*가 아닌 경우
 - * 제16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 신청양식 미준수, 증빙자료 미제출 등이 신청자료 보완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제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피신청인의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합의 시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신청한 경우(합의 시도 5회 미만인 경우, 1일에 여러 차례 시도한 경우 1회로 계산)
- 분쟁 성질상 조정이 부적합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 * 반려 또는 기각 사유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조정안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 구성원(대표자 포함),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소유자에게 등록신청자료의 생산·제출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가능
 -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수락 권고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가능
- 양 당사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수락 여부를 통보

(참고) 법 제16조의3(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①·② (생략)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정안을 마련하여 조정신청인과 상대방에게 제시하고 그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9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조정안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체의 구성원(대표자를 포함한다) 또는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소유자에게 등록신청자료의 생산·제출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관한 자료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들에게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1. 11.]

시행규칙 제20조의2(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③ 법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분쟁 조정의 신청인 및 상대방은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 5. 12.]

-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진행한 분쟁 조정 절차와 관련하여, 조정신청인은 상대방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법 제16조의4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하에 1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를 받을 수 있음
 - 제출유예를 신청하려는 경우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함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출유예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제출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유예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6서식에 따른 연장신청서를 제출함

(참고) 법 제16조의4(소유자의 사용동의를 요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 ①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른 조정을 신청한 자는 같은 조 제3항의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16조 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제출유예를 승인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국가경제 및 산업발전 등에 미치는 영향
 2. 공정한 거래 및 경쟁촉진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출유예기간을 단축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출유예의 승인을 받고 등록을 한 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출유예 신청 및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5. 11. 11.]

시행규칙 제20조의3(소유자의 사용동의를 필요한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로 진행된 분쟁 조정 절차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② (생략)
- ③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제출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예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3호의6서식의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출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2.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결과 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한다)
 3.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본조신설 2026. 5. 12.]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4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ce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서

※ 책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신청인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신청내용	화학물질명 (출정명) _____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_____ 공동활용 자료 종류 <input type="checkbox"/>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시험항목:) _____ <input type="checkbox"/> 유해성에 관한 자료 (시험항목:) _____ 유예기간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를 신청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2호의 사유로 신청한 본청 조정 절차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시된 조정안을 상대방이 수락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입사실 신고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입사실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주료 없 음
---	------------

작성방법

1. "공동활용 자료 종류"란의 시험항목은 제출유예를 신청하려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시험항목을 기재합니다.
 2. "유예기간"란은 희망하는 기간(해당 물질의 화학물질등록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범위)을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서 작성 → 결정 → 제출유예 신청 결과 통지
  신청인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 안전원
  
```

210mm × 297mm(복합지(80g/㎡) 또는 동결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의6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ce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

※ 책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신청인	(전자우편:)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팩스번호:)	
제출유예 내용	화학물질명 (출정명) _____ 고유번호 (CAS No. 등 화학물질 식별번호) _____ 공동활용 자료 종류 <input type="checkbox"/>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시험항목:) _____ <input type="checkbox"/> 유해성에 관한 자료 (시험항목:) _____ 이전 유예 기간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연장 유예 기간 _____년 _____월 _____일까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_____년 _____월 _____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화학물질안전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제출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하는 서류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 신청결과 통지서 원본(전자문서로 발급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말합니다) 3. 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입사실 신고증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생산자가 선입사실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주료 없 음
---	------------

작성방법

"연장 유예 기간"란에는 희망하는 기간(이전 유예 기간으로부터 1년 이내 범위)을 기재합니다.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통지서 작성 → 결정 → 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결과 통지
  신청인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 안전원   화학물질 안전원
  
```

210mm × 297mm(복합지(80g/㎡) 또는 동결지(80g/㎡))

<그림 19> 등록신청자료 제출유예·제출유예 기간 연장 신청서

라. 해외 사례

- EU는 화학물질 등록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료공유(Data Sharing) 관련 분쟁 발생 시, ECHA(European Chemicals Agency)를 통해 참조권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Decision)”을 내리는 행정 절차를 운영
- 참조권 구매에 대해 성실한 협의 노력(Every effort), 자료의 필요성, 동일물질 확인, 법적 근거 충족(REACH Article 27, 30) 등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료 참조권 허가 가능
- ※ ECHA의 결정에 따라 자료 참조권 허가 이후, 신청자는 해당 자료에 대한 비용 지급 및 분담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당사자 간 비용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함

(참고) 자료공유 분쟁 시 ECHA의 판단 및 조치 근거

- REACH Article 27(6) : 기존 등록자료 참조권 부여
 - 기 등록자와 등록예정자 간 자료공유 협상이 결렬된 경우, 등록예정자는 ECHA에 중재 요청이 가능함
 - ECHA는 양측의 협상 노력 여부, 비용 부담 의사 및 지급 증빙 여부를 확인하여 참조권 부여 여부를 결정함
- REACH Article 30(3) : 척추동물 시험자료 보호 및 참조권 부여
 -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소유자가 비용 정보 제공 또는 자료공유를 거부하였으나 해당 자료가 다른 등록자에 의하여 기 제출된 경우 ECHA는 해당자료의 참조권을 등록예정자에게 부여 가능함
 - 단, 시험자료 보유자는 시험보고서 소유자는 등록예정자에게 해당자료의 시험 전문 보고서를 제공 가능한 경우에 한해 비용을 균등 부담함

마. 분쟁 조정 신청 반려사유 예시

- 공동제출, 공동활용에 관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 예시는 다음과 같음

<표 22>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 예시

분쟁유형		주요 내용(예시)
공통	반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서 정하는 조정신청사유*가 아닌 경우 ○ 신청양식 미준수, 증빙자료 미제출 등이 신청자료 보완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제출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피신청인의 정보가 불명확한 경우 ○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합의 시도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신청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 시도 5회 미만인 경우 ※ 1일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한 경우 1회로 계산
	반려 또는 기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따라 분쟁 성질상 조정이 부적합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조정을 신청한 경우**

분쟁유형	주요 내용(예시)
공동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체의 대표등록이 이행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쟁조정 신청 전에 이미 협의체의 등록이 이행되어 공동제출 자료의 선택·생산, 비용분담 및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작성·제출에 관한 합의가 완료된 경우 ※ 다만, 소극적참여자는 비용분담에 대한 조정 신청 가능 ⇒ (반려) 공동제출 자료의 선택·생산, 비용 분담 및 등록신청자료의 공동 작성·제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u>화학물질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등록이 완료된 경우는 조정 신청 대상에서 제외</u> ○ 시험자료 범위, 시료, 시험방법의 선정 등에 관한 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표 물질식별정보 정립 과정에서 시험자료의 범위와 시료 선정 기준, 별개 협의체 구성 필요 여부 등을 두고 이견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CAS 번호를 기준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였으나, 해당 물질이 고분자화합물로서 단량체 함량비 및 분자량 차이 등으로 인해 물질간 특성이 상이함에 따라 이견이 발생한 경우 - Read-Across 등 동물시험 대체방법 적용 및 시험방법 설정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보다 다수결 원칙이 우선시됨에 따라 분쟁 심화 ⇒ (반려) 등록제도의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성질상 조정이 부적합

* 제16조의3제1항제1호, 제2호

** 제16조의3제2항

바. 분쟁 조정 신청 시 유의사항

- 당사자 간 합의과정을 충분히 거쳤음에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신청하여야 함. 신청인은 합의를 5회 이상 시도한 내역과 합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 주고받은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물질식별정보 확인과 같이 등록제도 운영과 직접 관련된 사안 등 조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사안은 조정대상이 될 수 없음

- 신청인은 단순히 피신청인이 제시하는 가격이 과도하다는 주장 외에 신청인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가격 및 그 근거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주요 유형별 분쟁 조정 당사자가 제출해야 하는 자료 예시는 다음과 같음

<표 23> 주요 분쟁 유형별 제출서류 예시

구분		제출서류 예시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분쟁조정 신청서*, 이메일회의 기록 등 판매 문의 및 협의과정 전반에 대한 증빙자료 등 * 접수 창구(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kreach.mcee.go.kr)를 통해 작성 및 제출 - (해당시) ①국외제조·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②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 (피신청인) 이메일·회의 기록 등 협의 과정 전반에 대한 증빙자료 등 ※ 분쟁 당사자 간 협의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공동제출	시험자료 비용분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시험자료 생산 견적서 등 가격의 합리성·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자료 등 • (피신청인) 시험자료 구매·생산 비용*, 행정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및 비용분담 산정 근거자료 등 * 시험분석기관 등 자료 구매·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의뢰서, 지출내역,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
공동활용	참조권 과도한 비용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①시험자료 생산 견적서, 유사 시험자료 시장가격 자료 등 가격의 합리성·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근거자료, ②비용 과다 여부 및 부당 조건(특정 컨설팅 요구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 (피신청인) ①시험자료 구매·생산 비용*, 행정비용에 대한 증빙자료 및 비용계상 산정 근거자료, ②시험자료 구성 내역 및 비용 산정 기준 등 비용계상 체계 관련 자료

구분	제출서류 예시
판매거부	<p>* 시험분석기관 등 자료 구매·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의뢰서, 지출내역, 거래명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 ①피신청인이 제시한 판매조건 및 부당조건 관련 자료, ②판매거부로 인해 발생한 등록 지연 또는 손해 관련 자료, ③유사 사례 또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과의 비교 자료 등 부당성 입증자료 • (피신청인) ①판매거부 결정 경위 및 사유를 설명하는 자료, ②참조권 판매 조건 및 기준에 관한 자료, ③판매 거부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 <p>* 비용 미지급, 협의 불성립 사유 등</p>

가. 추가 자료제출 명령에 따른 비용분담

- 모든 협의체 구성원은 등록통지서가 발행되어 물질등록이 완료된 이후에도,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함
- 협약을 체결한 대표자, 적극적참여자 및 소극적참여자뿐만 아니라 후발등록자도 해당

(참고) 법 제18조(유해성 심사)

-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화학물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등록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개정 2025. 10. 1.>
-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성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록한 자에게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및 결과의 통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 10. 1.>

- 일반적으로 협의체 내에서 동일한 등록 무게범위라면 같은 자료 제출 명령을 받게 될 확률이 큼
- 이 경우, 공식적인 협의체 활동이 종료되었다고 해도 협의체 구성원간 신규자료 생산에 대한 합의를 통해 비용을 분담할 수 있음
- 만약, 등록을 이행하였지만 더는 해당 물질을 제조·수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

<표 24> 관련 신문고 질의·응답 사례

구 분	내 용
질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등록 유예기간 내에 1톤 이상 등록대상 기존화학물질을 수입하였음 ○ 현재 등록이 완료되었으나, 만약 등록 이후 자료 제출 명령이 발생하여 수입할 의사가 없는 경우 자료 제출을 이행하지 않고, 등록을 취하할 수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람
답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등록된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와 관련한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기 위해 등록 취하가 가능한지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수입자가 등록된 화학물질에 대해 더이상 수입계획이 없다 할지라도 그동안 수입하였던 화학물질은 여전히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으므로 수입자는 화학물질 등록·평가제도의 취지에 맞게 등록 취하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물질의 유해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공동제출 중도 포기·탈퇴 시 비용의 분담

- 화학물질의 등록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어, 공동제출 협의체 활동 중에도 사업의 철회, 유통구조 변경 등 다양한 사유로 물질 등록을 중도에 포기하는 협약 당사자가 발생할 수 있음
- 협약 당사자 수에 의해 각 분담비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나의 협약 당사자 탈퇴는 전체 협의체 행정·운영에 영향을 줌
- 따라서 이러한 영향을 방지하고자 협약 당사자 간의 협약서에는 탈퇴 시점까지 발생한 협의체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음
- 공동제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거나 탈퇴를 고민하는 당사자들은 이러한 사항을 인지하고 있을 것을 권함
- 만약, 등록 여부의 변동 가능성이 큰 경우라면 ‘소극적참여자’로서 추이를 살피며 물질 등록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견본협약서'中,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2조(운영) ⑥ 협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서면 통보로 본 협약을 탈퇴할 수 있으며, 서면 통보 시 탈퇴신청서에 탈퇴 사유 작성 및 직인 날인하여 대표자 [및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게 송부한다. 탈퇴의 효력은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발생한다. 본 협약을 탈퇴하는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을 탈퇴하기 전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 (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일반 및 기타 행정비용을 제외)에 대한 모든 금전적 부담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 협약을 탈퇴하는 협약 당사자는 자신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본 협약 해지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권리 등에 대하여 권한이 없다. 본 협약을 탈퇴하는 협약 당사자 외의 다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을 탈퇴하는 협약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⑦ 대표자는 직권으로 또는 본 협약상 의무를 이행한 협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본 협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협약 당사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촉구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서면 통지를 받은 협약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는 해당 협약 당사자에게 협약 탈퇴를 통지할 수 있고, 대표자의 탈퇴 통지가 도달하면 해당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에서 탈퇴된다.

「별첨자료」

가.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기본협약서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기본협약서

2026. 5.

본 견본협약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요구하는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준비·생산, 비용분담, 기밀보호 등과 관련된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의무가 있는 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본 견본협약서의 본문에 옵션으로 표기되어있는 [*이탈릭체*]는 각 사례에 해당하는 당사자들에게만 적용된다. 이는 이해당사자들이 각 사례별로 반영할 내용의 타당성을 합의하고 또한 채택할 요소가 무엇이며 어떠한 수준으로 할지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본 견본협약서에서 언급된 내용은 강제적이거나 법적 효력을 갖지 않으며, 다만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을 위한 공동제출 협의체 구성원들이 화학물질 등록평가법 이행 또는 합의를 위해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본 협약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이하 “공동제출의무자”라고 한다) 중 아래 기명날인한 협약당사자 및 환경건설팅회사 간의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에 관한 합의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협약은 본 협약에 서명한 당사자들이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물질명(KE No 0000, CAS No. 00-00-0)]의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 조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법 제2조에 따른다.

1. “등록대상 물질”이란 본 협약에 따라 등록하고자 하는 기존화학물질로서 [물질명(KE No 0000, CAS No. 00-00-0)]를 말하며 그 화학물질의 수화물 또는 무수물을 포함한다.
2. “협업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을 의미한다.
3. “협업체 구성원”이란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후 협업체에 가입한 자로서, 대표자를 포함한 협약 당사자와 협약 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 의무자로 구분된다.
4. “대표자”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5조제1항 본문의 “대표자”로서 협약당사자 중 대표기업을 말한다.
5. “협약 당사자”란 협업체 구성원 중 본 협약에 서명한 자를 말한다.
6. “협약 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의무자”란 협업체 구성원 중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 물질의 등록에 관한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여야 하는 자로서 협약 당사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7. “외부 서비스 제공자”란 별도의 계약에 따라 공동제출 협업체의 운영 및 등록신청서류 작성 등 등록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8.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란 협약 당사자가 등록대상 물질의 등록을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를 말한다.
9. “시험자료”란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중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로서 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제출방법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10. “참조권”이란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동 또는 개별 제출에 한정된 목적으로 시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11. “사용권”이란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은 물론 다른 목적을 위해 아무런 제한 없이 물질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12. “소유권”이란 시험자료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제3자에게 시험자료에 대한 참조권을 적법하게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13. “자료소유자”란 소유권을 보유한 자로서 제3자에게 시험자료에 대한 참조권을 적법하게 허여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4. “일반 행정비용”이란 대표자를 포함한 협약 당사자가 공동제출 등록신청서류를 준비 및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법률·기술자문 등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대표자 선정 및 대표자의 직무) ① 대표자는 협의체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선정된 자로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당사자로 한다.

② 대표자는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과 관련하여 협약 당사자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선택·생산에 관한 업무 총괄
2. 등록신청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의 집행 및 분담에 관한 업무
3. 등록 진행상황에 관하여 협약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 보고 업무
4. 등록신청자료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업무
5. 협약 당사자 사이의 의견조정 및 의사결정 절차의 주재

③ 대표자는 제2항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협약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다른 협약 당사자에게 위임 또는 외부 서비스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위탁하는 업무의 범위 및 책임사항, 계약 여부 등을 협약 당사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협약 당사자는 대표자가 제2항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협약 당사자 과반수의 동의에 따라 대표자를 해임할 수 있고, 새로운 대표자는 협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정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는 자로 한다.

⑤ 대표자는 후임 대표자가 선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사임할 수 있다.

⑥ 협약 당사자는 대표자가 수행하는 제2항의 업무에 대한 보상을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다.

제4조(협약 당사자의 협력의무) ① 협약 당사자는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준비 및 작성·제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표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② 협약 당사자는 자신이 소유권을 보유한 시험자료의 공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에 따른 비용부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비용 부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 당사자로서의 자격과 권리의 상실과 함께 민·형사 상의 조치를 포함한 법적 조치가 이행될 수 있다.

④ 협약 당사자는 등록대상 물질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함에 있어 제약을 받지 않도록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⑤ 비용을 지불한 협약 당사자에게는 공동제출 협의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당 정보 중, 등록 신청자료 및 비용 지불과 관련된 정보는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준비 및 제출

제5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범위 결정) ① 협약 당사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자료를 공동으로 준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분류 및 표시
2. 법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3. 법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유해성
4.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시험계획서

② 협약 당사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자료의 공동제출 여부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만약 협약 당사자 사이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는 협약 당사자가 각자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1.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2. 법 제1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제6조(협약 당사자가 보유한 등록신청자료의 수집 및 선택) ① 협약 당사자는 등록신청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를 대표자 및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시험자료에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위 자료가 공개될 경우 자료소유자의 영업에 손실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자료소유자는 그러한 취지를 다른 협약 당사자에게 소명해야 한다.

② 대표자 및 외부 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라 협약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험자료(이하 '보유 시험자료'라고 한다)에 대하여 법상 등록신청자료로서의 적합 여부를 검토·평가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협약 당사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유 시험자료를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로서 채택할지 여부는 협약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결정한다. 협약 당사자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의 과반수의 결정에 따른다.

④ 제3항에 따라 보유 시험자료를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보유 시험자료의 소유자는 해당 보유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권 [및/또는] 참조권을 협약 당사자에게 부여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보유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권 [및/또는] 참조권을 부여한 자료소유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보증한다.

1. 자료소유자는 그 시험자료의 정당한 소유자이며, 다른 협약 당사자에게 시험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에 문제가 없음
2. 자료소유자가 보유한 시험자료는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청구 통지를 받지 않았음

⑥ 협약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 중, 대표등록자의 등록서류 제출예정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의 제공 정보는 공동제출 협의체의 등록 일정을 고려하여 공동제출 등록신청 자료에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생산 및 구매) ① 대표자는 협약 당사자를 대표하여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확보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참조권을 구매하거나 생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직접 또는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생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험자료를 공단에서 주관하는 “유해성시험자료 생산 지원사업” 등을 통해 생산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소유권을 보유한 기후에너지환경부(공단)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아 등록서류로 반드시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위해 공동으로 생산된 정보에 대한 시험 결과자료의 사본은 이에 대한 정당한 비용을 부담한 협약 당사자가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한다.

④ 제1항 후단에 따라 생산된 시험자료는 자료의 소유권을 보유한 기후에너지환경부(공단) 또는 협약 당사자의 서면 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할 수 없다.

제8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제출) ① 대표자는 협약 당사자를 대표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집되거나 생산된 자료를 제출에 적합하도록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협약 당사자는 대표자가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기 전 이에 관하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협약 당사자를 대표하여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를 [2000년 00월 00일]까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 마감일은 [대표자 또는 가장 높은 톤수의 협약 당사자]의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대표자 또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는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한 경우 협의체 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협약 당사자는 반드시 [별표1]에서 규정한 무게범위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등록시점에서 [별표1]에서 규정한 무게범위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비용을 재산정하여 부담한다.

⑤ 협약체결시점으로부터 협약 당사자의 등록 톤수 변경이 상위 무게범위가 아닌 하위 무게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 이전의 무게범위에 해당하는 분담비용을 지불한다. 다만,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분담비용 확정 전까지 하위 무게범위로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공동제출 협의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9조(시험자료 소유권 등) ① 제6조에 따라 협약 당사자가 보유한 시험자료에 대한 소유권은 본 협약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제7조제1항의 시험자료를 협약 당사자가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 생산하는 경우, 소유권은 비용 분담에 참여한 당사자에게 부여된다. 추후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소유권 대상 및 참조권 등의 활용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합의된 내용은 부속서에 명기한다.

③ [별표1]에서 규정한 등록 무게범위의 증가 또는 유해성심사 자료 제출명령 등에 의한 추가 시험자료가 요구되는 경우, 협약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비용을 지불하면 등록 이후라도 추가 시험자료에 대한 제10조제1항의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다.

④ 자료소유자는 시험자료의 사용권 또는 참조권의 기간을 제한할 수 있으나, 적어도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협약 당사자에게는 사용권 또는 참조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본 협약은 제2항에 따라 생산된 시험자료 이외의 시험자료와 관련하여 협약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현재 또는 미래의 소유권,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0조(협약 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의무자의 공동제출 및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 ① 법 제15조에 따라 협약 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의무자가 공동제출의 목적으로 이미 제출된 등록신청자료의 참조권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새롭게 제조·수입하려는 자(이하 '후발등록자'라 한다)가 법 제16조에 따른 기존 등록신청자료의 공동활용의 목적으로 이미 제출된 등록신청자료의 참조권을 요청하는 경우,

자료의 활용 범위 및 비용 분담과 관련하여 별도의 합의를 할 수 있다. 이때 대표자 또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는 협약 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의무자 및 후발등록자에게 산정기준 및 등록에 수반되는 상세 내역, 지원사업을 통해 등록한 경우 그 사업 내용과 지원내역 등을 투명하게 알려야 한다.

② 대표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협약 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의무자에게 대가를 지급받음과 동시에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에 대한 사용권 또는 참조권을 부여하여야 하고, 해당 등록신청 자료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 분담 등) ① 제6조제3항에 따라 특정 협약 당사자가 제공한 보유 시험자료를 공동 제출 등록신청자료로 채택하는 경우, 보유 시험자료의 가치는 다음 각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협약 당사자의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협약 당사자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독립적인 전문 기관의 감정결과에 따를 수 있다.

1. 법상 제출이 요구되는 자료와의 관련성
2. 과학적 타당성
3. 시험자료의 신뢰성
4. 자료소유자가 자료 생산을 위해 지출한 비용
5. 보유 시험자료를 대체할 시험자료를 새롭게 생산하거나 사용권 또는 참조권을 제3자로부터 부여받기 위해 필요한 비용
6. 기타 보유 시험자료의 가치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협약 당사자는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에 필요한 비용을 협약 당사자 간 투명하고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방법으로 분담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라 보유 시험자료를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해당 시험자료 참조권 구매비용은 등록을 위하여 해당 시험자료가 필요한 협약 당사자 중 자료소유자를 제외하여 균등하게 분담한다.
2. 제7조제1항에 따라 제3자로부터 참조권을 구매하거나 시험자료를 생산하는 경우는 등록을 위하여 해당 시험자료가 필요한 협약 당사자 간에 모든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한다.

③ 협약 당사자가 변경등록을 위해 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활용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먼저 분담한 협약 당사자와 균등하게 분담하여 정산한다.

④ 협약 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의무자에게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사용권 또는 참조권을 판매하는 경우 사용권 또는 참조권 부여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모두 동일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결정한다.

1.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생산을 위해 지출한 비용
2. 자료소유자가 보유 시험자료에 대한 사용권 또는 참조권을 부여하고 이미 지급받은 비용
3. 해당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에 대한 사용권 또는 참조권 부여에 대한 예상 수요

⑤ 협약 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의무자 중 협약 당사자와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를 가진 국내 기업의 경우 제4항에 따라 산정된 참조권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⑥ 협약 당사자는 후발등록자에게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에 수반된 비용(일반 행정비용 및 시험자료 확보 비용) 외 별도의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이익을 취하지 않아야 하며, 시험자료 확보 비용에 한정하여 청구하되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항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대표자 및 협약 당사자의 등록신청이 완료된 이후라도, 다음과 같이 공동제출 협의체에서 공통의 자료가 필요한 경우 자료의 공유 및 비용 분담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안전원의 보완요청 이행을 위해 추가자료 생산이 필요한 경우
2. 화학물질안전원의 추가자료 제출 명령 이행을 위해 추가자료 생산이 필요한 경우
3. 변경등록 등의 사유로 인한 추가자료의 생산이 필요한 경우

⑧ 대표자는 제4항에 따라 협약 당사자가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특정 협약 당사자가 소유하여 제공한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사용권 또는 참조권을 협약 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의무자에게 부여하고 지급받은 대가를 협약 당사자들 또는 해당 자료를 제공한 특정 협약 당사자와 협의하여 생산비용 분담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⑨ 본 협약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금액은 은행 송금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요금, 세금 및 기타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제3장 협약의 운영

제12조(운영) ① 협약 당사자간의 의사 결정은 본 협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상호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합의가 어려운 경우 대표자의 주재에 따라 협약 당사자 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 당사자 찬·반 동수로 인해 의사결정이 부결될 경우 대표자의 재량으로 결정한다.

③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서면 또는 온라인 매체를 통한 결의 시 기한 내에 합당한 사유 없이 회신이 없는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3자와의 모든 계약의 체결 업무는 협약 당사자 전원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표자 또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담당한다.

⑤ 본 협약 체결을 위해 협약서 서명 요청 후 20일 이내에 서명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⑥ 협약 당사자는 언제든지 서면 통보로 본 협약을 탈퇴할 수 있으며, 서면 통보 시 탈퇴신청서에 탈퇴 사유 작성 및 직인 날인하여 대표자 [및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게 송부한다. 탈퇴의 효력은 서면 통보일로부터 30일 후에 발생한다. 본 협약을 탈퇴하는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을 탈퇴하기 전까지 발행된 세금계산서(제8항 및 제9항에 따른 일반 및 기타 행정비용을 제외)에 대한 모든 금전적 부담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 협약을 탈퇴하는 협약 당사자는 자신의 지급 의무를 이행하였다 하더라도 본 협약 해지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권리 등에 대하여 권한이 없다. 본 협약을 탈퇴하는 협약 당사자 외의 다른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을 탈퇴하는 협약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⑦ 대표자는 직권으로 또는 본 협약상 의무를 이행한 협약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본 협약으로 인하여 발생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협약 당사자에 대하여 그 이행의 촉구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서면 통지를 받은 협약 당사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대표자는 해당 협약 당사자에게 협약 탈퇴를 통지할 수 있고, 대표자의 탈퇴 통지가 도달하면 해당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에서 탈퇴된다.

제13조(비용의 관리) ① 협의체의 모든 비용은 대표자 또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를 통해 입금 및 출금이 이루어진다.

②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해 제11조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협약 당사자가 대표자 또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송부한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대표자 또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 명의의 계좌에 현금으로 납부하며, 통화는 원화로 한다.

③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비용의 지급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을 대표자 또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전 납부한다.

④ 대표자 또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는 협의체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청구 시 비용산정에 대한 증빙자료 등을 협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⑤ 대표자 또는 협약 당사자는 국외자료구매 등 해외비용 송금이 필요한 경우 환율을 고려하여 산정된 비용을 사전 납부하도록 하며, 대표자 또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는 비용 산정시점과 송금 시점의 환율 차이를 고려한 차액을 송금 이후 협약 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⑥ 대표자 또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는 비용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지출보고서를 협약 당사자에게 [반기별 / 분기별] 보고한다.

⑦ 대표자 또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신의성실하게 협약 당사자에게 지급 또는 청구한 비용을 관리한다. 외부 서비스 제공자는 생성 또는 획득한 정보의 총 가치에 대한 기록을 [*]년간 보관한다.

⑧ 대표자 또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는 제11조에 따라 협약 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의무자로부터 지급받은 대가에 대한 적절한 배분 시점과 방법에 관하여 협약 당사자와 별도 협의하여 정해야 하되, 이때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매 등록유예기간 종료시점 이후 한달] 및 [등록유예기간 종료 이후 반년 또는 매년 단위]
2. [협약 당사자에게만 소유권 또는 참조권 판매 비용의 배분] 또는 [공동제출 등록신청 자료를 구매하여 등록유예기간별 추가된 협약 당사자가 아닌 공동제출의무자를 포함한 비용의 배분]

제4장 기밀보호

제14조(기밀보호) ① 협약 당사자는 공개되는 정보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협약 당사자는 다른 협약 당사자의 정보를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게 문의 및 요청하지 않으며 외부 서비스 제공자 역시 협약 당사자의 정보를 다른 협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③ 정보를 제공한 협약 당사자를 제외한 다른 협약 당사자는 기밀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등록대상 물질의 등록에 관한 모든 정보를 기밀로 취급하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정보 공개가 요구되지 않는 한 제3자에게 어떤 정보도 공개하지 않음(단, 외부 서비스 제공자는 제3자에서 제외)
2. 협약 당사자 또는 제3자에 의하여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발견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관련 정부기관에 의하여 정보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협약 당사자는 이를 즉시 다른 협약 당사자에게 고지

3. 등록대상 물질의 등록에 관한 모든 정보는 본 협약에 의하여 허가된 범위로만 사용
4. 등록대상 물질의 등록과 관련하여 직원 및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경우,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에서 허가된 범위 내에서만 필요한 정보를 제공
5. 대표자는 기밀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절차를 만들고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게 기밀 보호를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만들 것을 요구

④ 정보를 받는 협약 당사자가 등록대상 물질에 관한 정보가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을 때에는 제2항의 기밀보호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1. 본 협약 전에 등록과 무관한 다른 목적으로 받은 정보
2. 정보 공개 전 이미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
3. 정보를 공개하여도 되는 권한을 가진 다른 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정보를 받는 협약 당사자가 자체 개발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이 있는 정보
5. 정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 공개를 요청한 정보
6. 법 제4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자료에 대한 정보

⑤ 협약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화학물질안전원에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에 대한 자료보호 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자료보호가 허용되지 않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본 협약에 따라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를 생산한 경우: 자료보호신청에 대하여 공동제출 협의체 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
2. 제3자로부터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사용권 또는 참조권을 부여 받은 경우: 자료소유자의 자료보호요청이 있는 경우

제5장 기타조항

제15조(자유경쟁)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한다.

제16조(법적 성격) 본 협약으로 인한 협약 당사자는 법인 또는 조합 기타 법적 단체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17조(성실의무와 면책) ①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을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법 이행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증거, 방법 및 기술을 바탕으로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특정 협약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표자를 포함하여 그 어떤 협약 당사자도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행위로 다른 협약 당사자에게 발생한 직접 또는 간접적 손해 및 손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 특히 대표자는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준비 및 제출 지연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③ 협약 당사자가 제공한 정보는 화학물질안전원으로부터 수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생성 또는 제공된 시험자료 및 정보를 평가·선택하는 것은 각 협약 당사자의 책임으로 해당 정보의 사용에 대한 책임은 각 협약 당사자에게 있다.

제18조(협약 기간 및 종료) ① 본 협약은 모든 협약 당사자가 협약을 체결한 시점부터 효력을 가지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까지 구속력을 갖는다. 본 협약은 그 목적 달성 후 모든 협약 당사자의 합의로 종료할 수 있다.

② 이 조항과 자료 소유권 등(제9조), 기밀보호(제14조), 성실의무와 면책(제17조), 분쟁 해결과 준거법(제20조) 조항은 해지, 기간 만료 등을 통해 본 협약이 종료 또는 해지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된다. 다만, 본 협약 제13조의 기밀보호 의무는 본 협약의 종료와 무관하게 물질 등록 후 15년 동안 유지된다.

제19조(권리·의무의 양도) ① 협약 당사자는 다른 협약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본 협약에 따른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 당사자의 합병·분할·분할합병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협약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경우에는 다른 협약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협약 당사자의 본 협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가 포괄승계인에게 이전된다. 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 및 증빙서류를 대표자 또는 외부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본 협약에 따른 권리 및 의무를 포괄승계인에게 이전한 협약 당사자는 권리 이전일부터 더 이상 본 협약서에 의한 권리 등을 보유 또는 행사하지 못한다.

제20조(분쟁 해결과 준거법) ① 협약 당사자는 본 협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조정, 중재법 및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등에 따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민사소송법 등에 의하여 해결한다. 본 분쟁에 대하여 내려지는 중재판정 등은 최종적인 것으로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것으로 합의한다.

② 본 협약의 조항 중 법령에 위반되는 등의 사정으로 인해 무효로 판단되더라도 이로 인해 나머지 조항들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상의 합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배포한 협약서에 협약 당사자 [및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각각 날인하여 취합한 사본을 각자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2000년 0월 0일

[협약 당사자 1] (대표자) 업체명

[협약 당사자 2] 업체명

[협약 당사자 3] 업체명

...

[별표 1] 협약 당사자 및 제조·수입량 무계범위 목록

번호	업체명	등록 무계범위
1 (대표자)	업체명	1,000톤 이상
2		100톤 이상 - 1,000톤 미만
3		100톤 이상 - 1,000톤 미만
⋮	⋮	⋮

[별표 2] 협약 당사자의 비용 분담 방법

1.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생산비용

협약 제7조제1항에 따라 협약 당사자들이 직접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를 생산하기로 한 경우,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와 그에 포함된 시험자료가 필요한 협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생산비용을 분담한다. 다만, 각 협약 당사자의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범위에 따른 비용 분담이 고려되어야 한다.

2.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사용권 또는 참조권 비용

가. 협약 제6조제4항에 따라 협약 당사자가 보유한 기존 시험자료를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해당 시험자료의 사용권 또는 참조권 부여비용은 등록을 위하여 해당 시험자료가 필요한 협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담한다.

나. 협약 제7조제4항에 따라 협약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보유한 기존 시험자료를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로 사용하기로 한 경우, 해당 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의 사용권 또는 참조권 부여비용은 등록을 위하여 해당 시험자료가 필요한 협약 당사자들 사이에서 분담한다.

3. 일반행정비용

가. 다음 각 항목의 비용은 일반행정비용으로 한다.

- 1) 비서업무, 외부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법률자문·기술자문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서 합리적인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비용
- 2) 대표자 또는 협약 당사자가 공동제출 등록신청서류를 준비·작성 및 제출하는 데 소요된 비용
- 3) 기타 공동제출 등록제출자료를 준비·작성 및 제출하는데 합리적으로 소요된 비용으로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모든 비용

나. 일반행정비용은 각 당사자의 연간 제조·수입량 무게범위를 고려하여 분담한다.

〈비용 산정〉

협약 당사자수	공동제출 협의체 운영비용(만원, VAT 별도)		
	운영비		비고
	단가	합계	
1			
2			
3			
4			
5			
⋮			

※ 국내·외 출장, 분기별 업무회의 외 추가 회의, 법률 및 회계 자문, 대관료, 통역·번역 등은 실비 청구

나. 협약 당사자는 공동제출 협의체 운영비용을 아래의 납부시기에 따라 지불한다.

<납부시기>

구분	비율(%)	납부시기
선금	40	모든 협약 당사자가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중도금	30	공동제출 협의체 필수 유해성 자료 확보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
잔금	30	대표자가 등록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4. 유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 비용

가.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기로 한 경우, 유해성에 관한 자료 제출대상인 협약 당사자는 작성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균등하게 분담한다.

나.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 유해성에 관한 자료 작성을 위해 수집된 용도는 공동제출 협의체 구성원 간 공유한다.

당사는 “물질명(CAS No / KE No)” 협의체의 협약 당사자로서 본 협약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며 이에 서명합니다.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참 고 자 료」

- Guidance on data sharing(ECHA), Version 3.1, January 2017
- 환경부 용역(「화학물질등록평가법」 관련 지침서 개발 및 적용사업, 2012)
- Cefic legal note - REACH: Fair and Transparent Cost Sharing in SIEFs(2013 12 05)
- 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공동제출 견본협약서(화학안전산업계 지원단, 2026)
- 화학물질 공동등록 등에 따른 비용분담 원칙에 관한 법제 연구(한국법제연구원, 2023)